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해설

2010. 6



농림수산물자료실



0005227



농림수산물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I. 추진경과 1

1. 의안원문 3
2.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26
3. 심사일정 등 추진경과 58

II. 조문별 해설 59

1. 제1장 총칙 61
2.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80
3.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110
4.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132
5.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255
6. 제6장 보칙 264
7. 제7장 벌칙 280
8. 별표 및 별지서식 291

III. 참고자료 305

1. Q&A 307
2. 언론보도 및 기고문 318
3.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347
4. 기타 참고자료 375

I

추진경과

1. 의안원문
2.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검토보고서
3. 심사일정 및 추진경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이계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92
----------	------

발의연월일 : 2008. 12. 24.

발 의 자 : 이계진 · 강성천 · 강승규
구본철 · 김성수 · 김우남
김정훈 · 김춘진 · 류근찬
박순자 · 박은수 · 박종희
성윤환 · 신성범 · 양정례
우제창 · 유성엽 · 유재중
이미경 · 이용삼 · 이윤석
이윤성 · 이인기 · 이해봉
장세환 · 정병국 · 정영희
정옥임 · 정해걸 · 한선교
허 천 · 홍일표 · 홍재형
황영철 의원(34인)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저수지, 방조제,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이 있으며, 그 대표적 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현재 등록된 시설은 17,679개소이나 설치연도가 50년 이상 된 시설이 10,981개소로써 전체의 62%에 달해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임.

이처럼 노후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수질보전과 연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DDA·FTA 등 시장 개방과 고유가 등에 대비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나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함.

또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국고지원은 2007년 현재 50%인 1,482억원에 불과하여 부족한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 항구적인 확보방안 마련이 절실함.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소규모 음성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 소득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재원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업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주택의 분양·임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 신재생에너지,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관광지 및 관광단지, 택지개발, 체육시설, 도시계획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중 국가, 지자체,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친환경개발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수질보전·개선 계획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사업종류에 따른 개별법상의 사업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도록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 및 주변 지역 활용구역 지정·변경·고시·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주변지역 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 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된 실시계획을 수립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사.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 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13조 부터 제14조까지).
- 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항, 부담금의 감면사항 및 국·공유지 처분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2조).

- 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안 제18조).
- 차.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는 경우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 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이익금을 유지관리 재원으로 조성하여 관리토록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 타. 사업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
- 파.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승인 취소시 청문, 권한의 위임,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저수지, 방조제, 둑(堤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나.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3.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촌공사를 말한다.
4.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구역”이란 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정비법」 제3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 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 사업(이하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업기반시설활용 사업계획 등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이하 “농업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대상 지역·위치 및 그 면적
3.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농업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
12. 자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15. 그 밖에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주체 또는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주변지역활용구역의 지정 등

제7조 (주변지역활용구역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구역(이하 “주변지역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주변지역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주변지역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주변지역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 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변지역활용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시설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농업기반 시설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 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9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2.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한다)
8.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유료도로법」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협의 또는 허가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4.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1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19.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0.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 계획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2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 등의 승인
2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31.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3.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36.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3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38.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 협의
 - 39.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 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업기반 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 (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18조 (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주변지역활용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22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주변지역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 ② 주변지역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와 제3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유지관리재원조성

- 제23조 (유지관리재원 조성)**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으로 발생할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성의 기준,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유지관리재원의 관리)** ①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3.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제6장 보 칙

제25조 (지도·감독 등)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비용의 부담) ①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 (행정처분) ①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별 칙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변지역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제31조 (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양벌규정) 국가를 제외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담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안 제2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민자유치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취지임.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을 위한 관련 예산을 추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토대로 개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총사업 규모, 재원조달 방안(민간,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재원분담 비율) 등이 산출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이계진 의원실 보좌관 송현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이계진의원 대표발의)

2009. 2.

농림수산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I. 제안경과

이 법률안은 2008년 12월 24일 이계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동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저수지, 방조제,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이 있으며, 그 대표적 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현재 등록된 시설은 17,679개소이나 설치년도가 50년 이상 된 시설이 10,981개소로써 전체의 62%에 달해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임.

이처럼 노후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수질 보전과 연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DDA·FTA 등 시장개방과 고유가 등에 대비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나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함.

또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국고지원은 2007년 현재 50%인 1,482억원에 불과하여 부족한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 항구적인 확보방안 마련이 절실함.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소규모 음성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 소득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재원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 개발·이용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업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주택의 분양·임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 신재생에너지,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관광지 및 관광단지, 택지개발, 체육시설, 도시계획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6호).
- 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중 국가, 지자체,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친환경개발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수질보전·개선 계획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사업종류에 따른 개별법상의 사업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도록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 및 주변 지역 활용구역 지정·변경·고시·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마. 주변지역 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9조).
- 바.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제대로 반영된 실시계획을 수립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토록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사.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항, 부담금의 감면사항 및 국·공유지 처분 제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2조).

자.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차.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는 경우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할 이익금을 유지관리 재원으로 조성하여 관리토록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

타. 사업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 시설 등의 설치에 국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

파.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승인 취소시 청문, 권한의 위임,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Ⅲ. 검토의견

1. 법 제정의 필요성

- 제정안은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함과 더불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수익금을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대표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현재 등록된 17,679개소 중 설치연도가 50년 이상인 시설이 10,981개소로 전체의 62%에 달하고 있고, 70,055개소에 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53.3%가 설치된 이후 30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안전사고와 막대한 손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30년미만		30-50년미만		50년이상		수혜면적 (ha)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70,055	100	32,684	46.7	19,697	28.1	17,674	25.2	832,044.0
저수지	17,679	100	1,203	6.8	5,495	31.1	10,981	62.1	482,009.0
양수장	6,314	100	4,620	73.2	1,462	23.2	232	3.6	161,877.2
양배수장	120	100	83	69.2	22	18.3	15	12.5	30,045.7
배수장	744	100	696	93.5	40	5.4	8	1.1	3,014.8
취입보	18,115	100	4,953	27.3	7,832	43.2	5,330	29.5	90,285.8
집수암거	2,828	100	881	31.2	1,830	64.7	117	4.1	14,152.9
관정	22,661	100	20,163	89.0	2,461	10.9	37	0.1	50,658.6
방조제	1,594	100	85	5.3	555	34.8	954	59.9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지출 현황을 보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지원은 실제 유지관리지출 비용에 50% 정도에 불과하여 국고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지출현황〉

(금액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소요액	2,743	2,666	2,732	3,109	2,937	3,121
국고보조	1,319	1,413	1,483	1,528	1,482	1,503
자체충당	1,424	1,253	1,249	1,581	1,455	1,618
(자산매각)	(621)	(710)	(654)	(922)	(717)	(980)

※ 2008년 자료는 결산 미완료에 따라 예산상 수치임.

최근 DDA 협상, FTA 확대 등 농업시장개방과 고유가 등으로 인한 생산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과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생산 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을 통해 농촌을 농업생산의 터전 이외에도 휴양·관광·주거공간 등이 어우러진 복합 단지로 개발하고, 도농간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며, 궁극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도시 근로자와 농가의 가구당 실질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7,427 (1.00)	9,997 (1.00)	12,278 (1.00)	19,519 (1.00)	26,853 (1.00)	28,643 (1.00)	39,012 (1.00)	44,100 (1.00)
농가소득	8,243 (1.11)	9,584 (0.96)	13,849 (1.13)	19,013 (0.97)	25,530 (0.95)	23,072 (0.81)	30,503 (0.78)	31,967 (0.73)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분석” 2004.12 자료에 통계청 최근자료를 추가하고,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05년 및 '07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환산

2. 법안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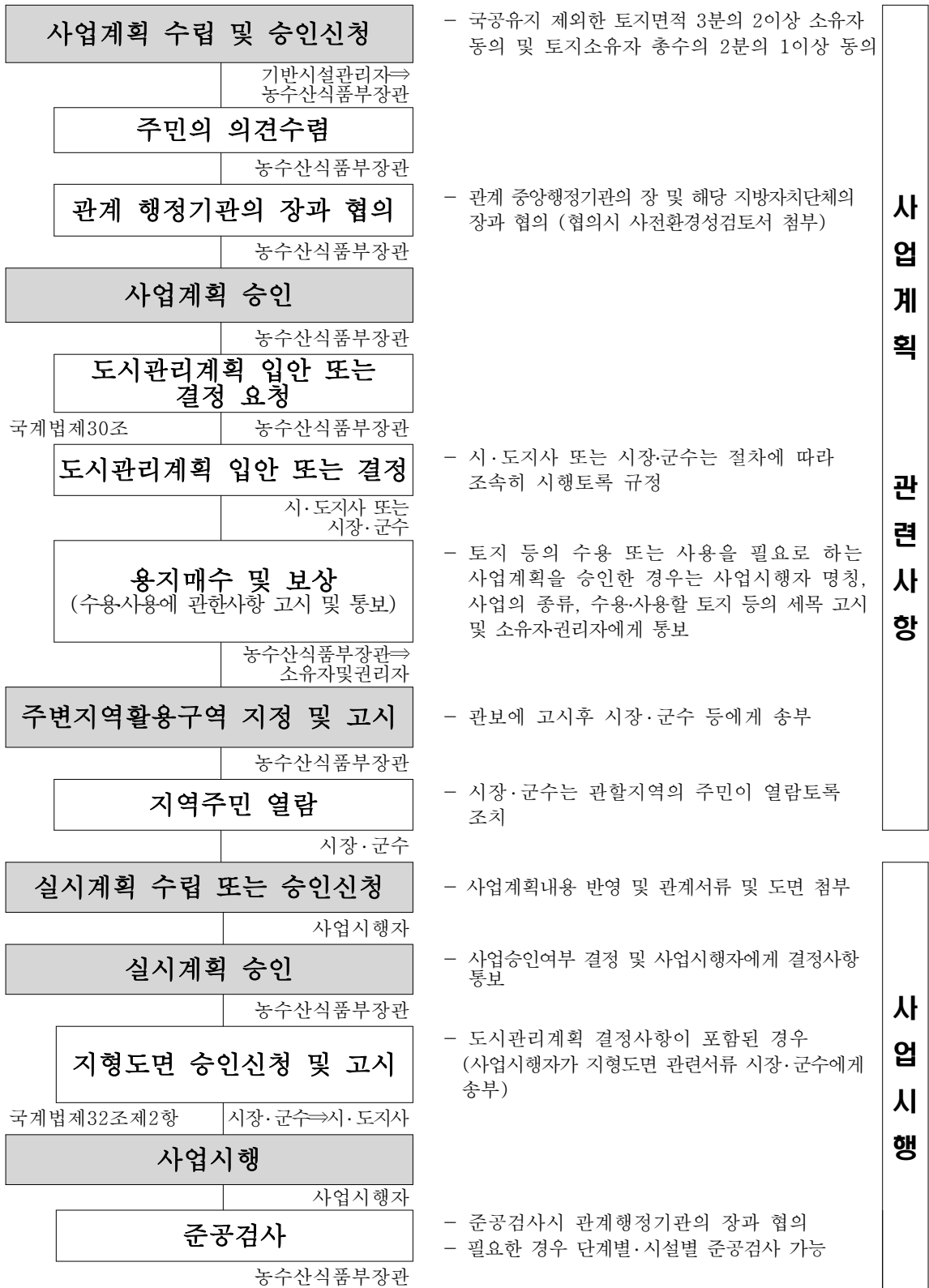
- 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제 처리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의 지정,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제1장(총칙)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이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농업생산기반 시설과 주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사업시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주변지역활용 구역의 지정, 인·허가의 의제처리,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5장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처분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이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사업 등을 정의
제2장 농업기반시설활용 사업 계획 등 (제4조~제6조)	○ 농업기반시설관리자중 국가, 지자체,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관광진흥법」 등 각 개별 법의 사업추체로 지정의제

구 분	주 요 내 용
제3장 주변지역활용구역의 지정 등 (제7조~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주변 지역 활용구역을 지정·고시 및 주민열람토록 규정 ○ 주변지역 활용구역 안에서의 건축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제4장 농업기반시설활용 사업의 시행 등(제10조~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의 반영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사항, 부담금의 감면사항,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사항을 규정 ○ 주변지역활용구역안의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 제한 및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제5장 유지관리재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시설 활용사업으로 발생할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 ○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 비용으로 사용
제6장 보칙 (제25조~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등을 규정 ○ 사업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국가·지자체가 보조·융자 가능토록 조치
제7장 벌칙 (제30조~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과 대리인·종업원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법인 및 개인의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
부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참조 : 제정안에 따른 사업시행 절차도〉



사업계획
관련사항

사업시행

※ 농수산식품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 가능
 - 시·도지사는 농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가능

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의 범위 (안 제2조 제6호, 제5조 제3항)

- 안 제2조제6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사업”이라 함)의 범위를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 각각의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주변지역 활용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관광진흥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각 개별법의 사업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제정안에 대하여는 주변지역 활용사업의 범위를 관광지·관광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 다른 공공기관의 사업범위로 확대하고, 각 개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맞춰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

한국관광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핵심사업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고, 공공기관간의 역할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등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다른 공공기관 해당사업의 시행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다른 공공기관간의 역할이 중복될 소지가 적고,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농어업 시장 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된 농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지역활용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수질 개선 등에 한정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변지역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와 사업시행자 지정의제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FTA 협상확대 등으로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 소득증대의 한 방편과 농어업·농어촌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농교류의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고,

이 법의 제정취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 마련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변지역 활용사업의 범위에 주말농장, 농어촌 체험시설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사업의 범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사업계획 승인시 한국농어촌공사를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택지개발사업과 사업자 지정의제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의 견
6.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 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	6. ----- ----- -----

원 안	수 정 의 견
<p>재원 확보와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농어촌정비법」 제3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p> <p>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p> <p><u>〈신 설〉</u></p> <p>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p> <p>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p> <p>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p>	<p>----- ----- -----.</p> <p>가.·나. (원안과 같음)</p> <p>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업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p> <p>라. ----- ----- ----- -----</p> <p>마. ----- ----- -----</p> <p>바. ----- ----- -----</p>

원 안	수 정 의 견
<p>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및 대지조성사업</p> <p>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p> <p>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 시설업</p> <p>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p> <p>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 시 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 주체 또는 시행자로 지정된 것 으로 본다.</p> <p>1.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p> <p>3.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p> <p>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p>	<p>사. ----- -----</p> <p>〈삭 제〉</p> <p>아. ~ 자. (원안과 같음)</p> <p>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p> <p>③ ----- ----- ----- ----- -----</p> <p>1. ~ 3. (원안과 같음)</p> <p>〈삭 제〉</p>

4. 주변지역활용구역의 지정 (안 제7조)

○ 안 제7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한 경우 주변지역활용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주변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제정안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주변지역 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한함으로써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변지역 활용사업에 장애가 되는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에서는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신설할 경우 다양한 지역·지구 등이 누진적으로 지정·운용됨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이 남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일반 국민의 토지이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수준에 맞추어 기본법 별표와 동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칙에서 기본법 별표를 개정하여 법률 간의 충돌과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해당법률에서 직접 지구를 지정할 경우 기본법 별표, 시행령에 위임하여 지정할 경우 기본법 시행령, 기타 하위규범에서 지정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지구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경우 기본법 별표를 개정해야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관련조문 참조)

○ 한편,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의 열람 등 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원화된 운영절차를 통해 지역·지구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 등 토지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주변지역 활용구역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8조에 따르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의 견			
<p>제7조(주변지역활용구역의 지정)</p> <p>①·② (생략)</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신 설></p>	<p>제7조(주변지역활용구역의 지정)</p> <p>①·② (원안과 같음)</p> <p>③ ----- ----- ----- ----- -----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한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td> <td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구역</td> </tr> </table>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구역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 지역 활용구역		

〈참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관련조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지구등의 지정(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 지구·지역 신설에 대해서는 제정안이 법률에서 직접 주변지역활용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이법 제5조 제1호의 적용을 받게됨.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에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시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타인 소유 토지출입 및 일시사용에 관한 규정은 개발행위 등을 규정한 대부분의 법률에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지, 동의 절차, 출입의 시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사용 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 제2조제3호와 제4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활용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허가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의 견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① (원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② ----- ----- ----- ----- -----

원 안	수 정 의 견
<p>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u>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u></p> <p>③~⑤ (생 략)</p>	<p>----- ----- ----- ----- ----- 행정 청인 사업시행자는 <u>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u></p> <p>③~⑤ (원안과 같음)</p>

6.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 사항이 포함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일괄의제처리하고 있음.
- 인·허가 등의 일괄의제처리는 사업추진 시 인·허가 등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각각 협의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사업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느 하나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전체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주변지역활용사업과 관련된 39개 법률의 의제사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의 경우 제정안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발시설 활용사업의 범위에 포함 되어 있지 않고,

현재에도 농업용저수지에서 수계 상 상류방향 5km 이내의 지역에 개별 공장 및 산업단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농림수산식품부도 해당 내용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상향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개발과 공장설립 등에 관한 의제처리조항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제정안 제2조 제6호의 사업범위, 제5조제3항의 사업자 지정의제, 제15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가 병행 검토되어야 하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을 제정안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조항도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서 협의의 경우,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있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의제처리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원 안	수 정 의 견
<p>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p>	<p>〈삭 제〉</p>
<p>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p>	<p>〈삭 제〉</p>
<p>2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p>	<p>25. ----- ----- -----</p>
<p>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p>	<p>26. ----- -----</p>
<p>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p>	<p>27. ----- -----</p>
<p>31.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p>	<p>28. ----- -----</p>
<p>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p>	<p>29. ----- ----- -----</p>
<p>33.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 성과사용의 심사</p>	<p>30. ----- -----</p>

원 안	수 정 의 견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1. ----- ----- -----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 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2. ----- ----- -----
36.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33. ----- -----
3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34. ----- ----- ----- -----
38.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 협의	〈삭 제〉
39.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35. ----- ----- -----

7.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안 제22조)

- 안 제22조는 국·공유지를 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의 관계규정(경쟁 입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음.

- 이는 행정재산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되, 공공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 다만, 안 제22조제3항에서는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 요청시 관계행정기관이 반드시 용도폐지 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다른 법률의 일반적인 입법례를 감안하여 법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국·공유지 처분제한 등에 대한 입법례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7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의 견
<p>제2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p> <p>① ~ ② (생략)</p> <p>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u>용도 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제2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p> <p>① ~ ② (원안과 같음)</p> <p>③ ----- ----- ----- ----- <u>협의를</u> <u>관하여</u> ----- -----.</p>

8. 기타 체계·자구에 관한 사항

가.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이법의 목적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발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입법취지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정의 목적에 이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의 견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그 <u>주변지역</u>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u> ----- ----- -----.</p>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의(안 제2조제2호)

- 안 제2조제2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방조제 등 일부시설로 한정하고,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의규정임.

동일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법률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폐지되어 더 이상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인정되지 않는 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정의하게 되면 일반국민의 법 이해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사업은 저수지, 방조제, 둑 이외에 용수로,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 등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과 통일되게 규정하되,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 활용사업”의 정의규정에 추가하여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의 견
<p>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p> <p>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저수지, 방조제, 둑(堤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p> <p>나.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p> <p>3~5 (생략)</p> <p>6.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p><삭 제></p> <p><삭 제></p> <p>3~5 (원안과 같음)</p> <p>6. ----- -----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 -----.</p>

다. 법문 오류 수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되었으므로 안 제2조제3호의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
-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9442호, 2009.2.6.자)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를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로 수정
-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제2조제4호는 도시관리계획의 정의규정이므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30조로 인용조문을 변경
- 안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 또는 허가를 의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로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4조로 인용조문을 변경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의 견
3.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u>한국농촌공사</u> 를 말한다.	3. ----- ----- ----- ----- <u>한국농어촌공사</u> -----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생략)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의 견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 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u>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 -----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u> -- ----- ----- ----- ----- ----- <u>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u> ----- ----- ----- <u>지방 도시</u> <u>계획위원회의</u> ----- ----- -----</p>
<p>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제2조 제4호</u>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p>	<p>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 <u>제30조</u> ----- ----- ----- ----- -----</p>

원 안	수 정 의 견
<p>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유료도로법」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협의 또는 허가</p>	<p>----- ----- ----- ----- ----- ----- -----</p>

□ 특별법 제정

- '07.10. 9 : **홍문표 의원발의**(국회의안과 제출)
- '07.10.19 ~29 : 관계부처 의견조회
- '07.11.13 : 농림해양위원회 특별법안 상정
- '08. 2.18 : 농림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계류
 - ※ 제17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률안 자동폐기
- '08.12.24 : 이계진의원 대표발의(34인)
- '09. 2.24 : 제18대 2월 임시국회 농림수산물위원회 상정
- '09. 3.24 : 농식품위원회 폐회중의 법안심사 소위 심의가결
- '09. 4.22 : 4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결
- '09. 4.29 :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 '09. 6. 9 : 법률 제9762호로 공포(시행: 공포 후 1년)

□ 하위법령 제정

- 하위법령 제정안 입안 및 법령정비협의회 심의 : '10.1.18까지
- 관계부처 협의 : '10. 2.18.~ 3. 2.(화)
 -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관리 실질평가 병행
- 사전규제심사 : '10. 2.22(월)
- 입법예고 : '10. 3. 5.~ 3.25.(20일)
- 법제처 심사 : '10. 4.19.~ 5. 31
- 차관회의 : '10. 5.27(목)
- 국무회의, 재가 및 부서 : '10. 6. 1.(화)
- 시행령 공포 : '10. 6. 8.(대통령령 제22189호)
- 시행규칙 공포 : '10. 6.10.(농림수산물부령 제128호)

II

조문별 해설

1. 제1장 총칙
2.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4.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5.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6. 제6장 보칙
7. 제7장 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 의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노후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수질보전과 연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규모 음성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 DDA·FTA 등 시장개방과 고유가로 인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에 대비하여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과 농외 소득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재원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이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임.
-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발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목적에 반영함

현 황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저수지, 방조제,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이 있으며, 그 대표적 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현재 등록된 시설은 17,679개소 이나 설치년도가 50년 이상된 시설이 10,981개소로써 전체의 62%에 달해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임.

○ 농업기반시설 설치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30년미만		30-50년미만		50년이상		수혜면적 (ha)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70,055	100	32,684	46.7	19,697	28.1	17,674	25.2	832,044.0
저 수 지	17,679	100	1,203	6.8	5,495	31.1	10,981	62.1	482,009.0
양 수 장	6,314	100	4,620	73.2	1,462	23.2	232	3.6	161,877.2
양배수장	120	100	83	69.2	22	18.3	15	12.5	30,045.7
배 수 장	744	100	696	93.5	40	5.4	8	1.1	3,014.8
취 입 보	18,115	100	4,953	27.3	7,832	43.2	5,330	29.5	90,285.8
집수암거	2,828	100	881	31.2	1,830	64.7	117	4.1	14,152.9
관 정	22,661	100	20,163	89.0	2,461	10.9	37	0.1	50,658.6
방 조 제	1,594	100	85	5.3	555	34.8	954	59.9	

문제점

-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종 규제 등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 개발이 어렵고 소규모 음성적인 난개발로 시설물의 효용증진 및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곤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이 대부분 개별법에 의거 개발 타당성 유무에 불구하고 개발이 제한됨
- 또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국고지원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족한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 항구적인 확보방안 마련이 절실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연간 3,000억 여원이 소요되나 국고지원은 약 50%인 1,524억원으로 부족한 유지관리재원을 매년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하였으나 한계점 도달

추진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활용
 - 농어촌 Rural Amenity를 활용한 체계적, 효율적 활용으로 농어촌 자원을 이용한 농외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 농어촌을 단순 생산의 터전이 아닌 문화·경제가 교류하는 삶의 터전으로 전환
 - 용도폐지 되거나, 수혜면적 감소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수질보전과 연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

- 개발이익을 유지관리 및 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 활용
 - 국고절감 효과
 - 개발적지를 대상으로 농어업·농어촌지역개발에 투자 가능

-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촌지역 저수지 등의 주변을 문화·역사, 관광·레저·휴양 등 정주공간 및 시설현대화와 병행 개발하여 도시민의 휴양·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이로 인하여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농외소득원이 창출되고 지역주민 고용증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개념>

- ∴ 저수지등을 활용하여 산책로, 레일바이크 도로로 개발하고, 양·배수장은 수변 카페 등을 병행하는 시설로 개·보수
- ∴ 저수지 수면에 무동력·전기동력에 의한 레포츠, 인공섬을 띄워 태양열 에너지를 발전하거나, 저층수를 이용 냉·온수 열을 활용한 축산단지, 지역특산물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에 이용
- ∴ 거리표시부표를 띄운 저수지에 물에 뜨는 공을 이용한 수상골프연습장 개설
- ∴ 경관이 수려한 수변공간에 승마장, 외승 관광코스개발 등 농어촌관광자원화
- ∴ 수중·수면·수변을 워터-프런트형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관광 르네상스 구현함으로써 관광객유치 및 농외소득 증대 등

입법례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향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항만기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항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관리 및 건설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법안은 17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되고, 제18대 국회에서 이계진의원 대표발의(34인)를 통해 국회에서 심의·의결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란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나.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의 의

- 현재 다른 법률에서 정의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정의와 같은 범위로 규정하여 일반국민의 법 이해에 혼란을 방지하고, 이 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한 및 예외 사항을 규정함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 「농어촌정비법」상의 관리자 중 이 법의 목적인 유지관리재원 목적달성과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토지소유자를 제외함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과 통일되게 규정하되,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정의에 추가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합리적인 범위를 산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등활용구역의 주변지역을 정의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개별법에 근거하여 구체화 함
 - 소규모 관정, 용·배수로, 농로 등을 대상으로 할 경우 난개발 우려되고 실질적 개발대상도 거의 없음, 다만, 필요시 목적외 사업으로 이용
-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어 농어업·농어촌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농교류의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어 도농교류활성화사업을 포함함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범위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의 범위를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 각각의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으로 규정함
 - ※ 신에너지 : 연로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수소 등
 - ※ 재생에너지 : 태양열, 소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태양열, 지열 등
- 제5조 제3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각 개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봄
- 동 법률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다른 공공기관 해당사업의 시행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다른 공공기관간의 역할이 중복될 소지가 적고,
 -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농어업 시장 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된 농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수질개선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변지역활용사업의 범위 확대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의제함

□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저수지 홍수위선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최대 2km(1,256ha)로 정하게 된 배경

○ 저수지는 크기가 반경 2km이상인 경우와 미만이 경우도 있으나, 시설의 둘레가 수십 km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홍수위선을 기점으로 최대 2km로 정함.

-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가 다양하고 용·배수로, 농로, 관정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시설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개발계획이 난발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설물과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음

- 양·배수장의 규모를 미터법에 맞게 킬로와트로 표시함

○ 다른 법률에서 주변지역의 범위설정시 타법 참고사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발의법안(국토해양위원회 백운성의원 대표발의)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또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 내의 지역을 일정한 비율이상 포함하는 구역에 대해 친수구역으로 지정

- 철도 역세권 및 철도공사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으로 철도공사의 만성적인 적자해소, 이용객의 편의 증진사업 추진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 발전소 반경 2km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2조 : “친수구역”을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내로 규정

□ 사업대상 지역 및 면적기준을 3만㎡이상으로 하여야할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용도지구로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준을 일부 인용함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10만㎡이상, 30만㎡이상)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음

□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 적용지역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입법효과 기대

※ 참고자료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농수산물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기반 정비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국제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체육시설업

○ 저수지 유효저수량 규모별 개소 수(총17,611개)

(단위: 천m³)

유효저수량	100 미만	500 미만	1,000 미만	2,000 미만	3,000 미만	3,000 이상
개소 수	15,570 (88%)	1,204 (7%)	397 (2%)	244 (1%)	87 (0.5%)	109 (0.6%)

○ 양(배)수장 동력 규모별 개소수(총7,336개)

동 력	7.5kW미만	15kW미만	37.3kW미만	56kW미만	74.6kW미만	186.5kW미만	186.5kW이상
개소 수	556 (8%)	937 (13%)	2,404 (33%)	1,029 (14%)	463 (6%)	929 (12%)	1,018 (14%)

○ 방조제: 1,962조, 연장 1,172km

출처 : 2009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p.322, 350

【활용가능 저수지 조사내용】

○ '08. 6월부터 대표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3,328개소의 약 9%인 313개소를 선정하여 개발가능 대상지 및 개발환경 조사결과 152개소가 개발 사업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규모를 정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할 경우 개발가능 저수지로 조사된 최소규모의 이상으로 규모를 정할 필요가 있음

(단위: m³)

규 모	5만 미만	10만 미만	20만 미만	30만 미만	50만 미만	100만 미만	100만 이상
개소 수	4	6	4	3	7	21	81

자원에 따른 개발유형

구분	거 리	도입가능 거리	도입가능 시설
자연적 자원	볼거리	숲속휴양, 호수, 지형, 동·식물 감상 등	관광유람시설, 동굴자원시설, 관찰로, 천체관측소(대), 전망대 등 자연감상을 위한 시설
	배울거리	생태학습(수생, 삼림) 등	생태학습장, 학습전시관, 식물원, 관찰데크(시설) 등 관찰 및 학습을 위해 필요한 시설
	놀거리	수상레포츠, 산악레포츠, 낚시, 스키, 썰매, 승마 등	스키장, 썰매장, 수상훈련장, 활공장, 사격장, 궁도장, 승마장, 낚시터, 산악자전거로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레포츠 시설
	쉼거리	삼림욕과 숙박, 온천 등	자동차야영장, 야영장, 숙박시설, 온천장, 찜질방, 숙박 및 휴양을 위해 필요한 시설
	먹거리	향토·전통음식(가공) 등	음식점 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시설
	살거리	주요자원을 이용한 상품	판매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시설
문화적 자원	볼거리	도시와 다른 경관, 지역환경 구성형태, 마을상징물 전시 등	야외공원(볼거리전시), 탐방로 등 문화자원 관람 및 볼거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배울거리	전통건축양식, 유명인사의 업적, 시조, 풍수지리, 문화재 등	학습전시장, 학습을 위해 필요한 시설
	놀거리	전통설화를 배경으로한 활동 등	민속놀이장, 공연시설 등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놀거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쉼거리	숙박, 농가숙박 등	숙박시설, 숙박농가 등의 시설
	먹거리	전통음식 및 생산작물	음식점 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시설
	살거리	공예품, 문화상품 등	판매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시설
사회적 자원	볼거리	작물경작지(밭, 논, 과수 등)	지역생활경관감상, 야외공원 등의 정비활동과 공용공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배울거리	경작체험, 수공예품 제작	경작체험장, 공예품제작장 등의 체험시설
	놀거리	명절놀이, 마을축제 및 공연 등	공연장, 행사놀이장 등 활동을 위한 수용 시설
	쉼거리	숙박, 농가숙박	숙박시설, 숙박농가 등의 시설
	먹거리	향토, 전통음식점 등	음식점 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시설
	살거리	생산물, 공예품, 캐릭터 상품	판매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溜池), 도로, 방조제, 둑(堤防)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16조 (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기반시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1. 국가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8조 (농어촌 주택 등의 분양 등) 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환지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 ②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의 공급가격 결정과 공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여 직접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개발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판장의 개설) ①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3>

② 제1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0조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①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소비지에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집하장의 효과적인 운영과 생산자의 출하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입지선정과 도로망의 개설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집하장중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시설기준을 갖춘 집하장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판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3>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2조제2호 2.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09.12.31>

관광지·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 1. 관광단지 :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추 수 있다)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의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다. 운동·오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 또는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라. 휴양·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희음식점, 관광극장 유희업점,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 관광식당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유통 관련 시설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개발·계획·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추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 시설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바.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 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다. 풍력
 - 라. 수력
 - 마. 연료전지
 - 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 의

- 개발과 관련된 규제는 현재 다수의 법령들에서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적 적용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총칙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전체에 공통되는 중요사항을 명시하고, 다른 법률의 준용, 적용, 배제, 우선적용, 적용제한 및 완화된 규정을 반영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국토공간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농지와 산지등만을 대상으로 개발에 이용하고 있으나,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3차원적 공간계획의 일환으로 수면, 수변, 간척지, 방조제, 양·배수장등을 본래의 기능 유지하면서 관광자원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의 입법을 통해 농업생산기반 시설등활용사업을 활성화 하려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특별법적 지위를 갖지 않고는 일반법들의 규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따라서 이법에 의해 적용되는 규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각종 개별법의 규제로 개발 잠재력이 있는 시설(수면·수변) 및 주변지역을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하는데 제약이 많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한하여 계획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입법례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별법에 의한 사례〉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의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내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관계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에 규제가 많았음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요청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마련
 - 인·허가 사항을 일괄의제처리를 함으로서 관계기관간 협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음

〈농업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의 경우 3ha 미만 개발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로 개발이 가능함
 - 민간의 소규모 난개발이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친환경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최소면적 단위(3ha이상)와 사전환경성검토 및 도시관리계획을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참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내 허용행위	농업보호구역내 허용행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농수산업관련 시험 연구 시설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농업인의 공동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3.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 4. 국방·군사시설 5. 하천, 제방,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 7.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관련시험연구시설(좌동)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농업인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3.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 4. 국방·군사 시설 5. 하천, 제방, 기타 준하는 국토보존시설 6. 문화재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기타 비슷한 공작물 7. 도로, 철도, 전기 공급 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0.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농원시설(부지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 - 주말농원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11.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p style="text-align: center;">《부지 1천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 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 ·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지역아동센터 · 기 원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 제공업소 (바닥면적합계 150제곱미터 미만) · 사진관·표구점·학원(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직업훈련소·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p style="text-align: center;">《부지 3천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농지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30조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대상 지역·위치 및 그 면적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
12. 자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15.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3. 제2조 각 호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포함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 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이 어렵다고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 되어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주변경관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 라.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의 면적 중 농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
 - 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 바.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용이 어렵다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시행령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의

-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 토지소유자를 제외한 농업기반시설관리자(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되, 사전에 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토록 규정함.

-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 지역 중 계획적·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난개발 방지 등을 도모
- 사업계획 수립 면적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도모
- 해당 농업기반시설물관리자가 사업계획수립을 수립하여, 수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금은 유지관리재원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의한 농업기반시설물관리자만 사업계획수립자가 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의 개발권역 내 공공시설물 및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대상지역의 선정 및 최소 단위 면적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 법 제정취지에 맞춰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 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지나친 농지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 대상지역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업계획의 승인 및 관계부처 협의 등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사항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사업내용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2만5천분의 1이상의 위치도, 지형도면,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법 제5조제2항에서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시 지자체장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여야 함
 - 사업을 시행하는 위치와 행위제한을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형도면 등 기본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도면 포함
 -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 등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
 - 법 제정 목적인 “농어촌 지역발전”과 관련된 농외소득 증대사항 포함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 중심의 소규모 개발 행위허가에 의한 개발이 성행하고 있어 난개발이 될 개연성이 높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
 -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추진계획

- 최소 개발면적 규모를 제한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친환경적인 사업계획 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가목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안림 등 다른 법령에서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운영 상 문제가 없음
 - 주변지역 중 농지의 면적 비율이 대개 5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 수립 대상 면적에 농지를 많이 포함하는 것은 농지보전 측면에서 불합리
-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 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수질보전 및 정비계획 등의 철저한 수립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수질보전과 연계한 개발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 제고

□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지역

- 제3조제1항제3호가목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보안림 등 다른 법령에서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 운영 상 문제가 없음
-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은 특별법 제정 목적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 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발·이용토록 하고 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는 수질오염, 수문분석 외에도 시설물의 안전관리, 개보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임
- 라목에서 주변지역 중 농지의 면적 비율이 대개 50%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 수립 대상 면적에 농지를 많이 포함하는 것은 농지보전 측면에서 불합리하므로 사업계획에 농지가 50%미만이 포함되도록 함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부분의 해소 요구(소방방재청) ⇒ 일부 수용,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부대사업계획 지역’을 제외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4 (사전환경성검토서)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검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기본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설의 목적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3. 규모 및 형식
4. 저수량 및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댐사용권을 설정받기로 예정된 자(이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댐사용권의 내용
6. 댐건설비용(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를 포함한다)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7. 댐건설사업시행자
8. 사업기간
9.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10. 댐건설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피해 및 이의 감소방안과 댐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1. 댐주변지역의 사회·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댐의 효용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12. 기타 댐건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특정한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
2. 항만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및 그 면적
3.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계획
4.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5. 공공시설의 설치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8.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9. 재원조달계획
10.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환지(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③ 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1.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 ⑤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인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轉用)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損壞)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위험저수지·댐의 위탁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하고 있는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시행자에게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부대사업계획(이하 "부대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한 위탁시행자 중에서 위험저수지·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험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자가 부대사업으로 인하여 투자비를 환수하거나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5조(주민의견 수렴)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 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의 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주민의견 수렴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각계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 가능토록 규정함.

-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규정 : 지자체 장에게 관계 서류 사본 송부(장관) → 공고 및 열람(지자체장) → 의견제출(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 의견검토 및 장관에게 제출(지자체장) → 의견반영여부 검토 및 통보(장관)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요청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통보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규정함.

▶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 공람·공고, 의회 의견 청취 →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신청(시장·군수) → 관계부서 협의(환경청 등)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지사) → 공람·지적 고시(시장·군수)

-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 시행자를 본 법안 제2조 제6호의 개별법상의 사업주체 또는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규정함.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활용계획을 승인한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이 승인됨과 동시에 용지매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황 및 문제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오로지 행정관청이며, 비행정관청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될 수 없고, 단지 도시 관리 계획 입안의 제안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함.

- 도시관리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개별법률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행자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중 일부는 본 법률에 따른 다양한 사업추진이 곤란할 수 있음

-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주체적인 지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하도록 함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의 주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 설치사업,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체육시설업 등

- 실시계획 승인 후 토지의 수용·사용권을 인정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용지매수가 어려움

- 사업계획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되고 고시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

-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입법효과가 있을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 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6조제7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③법 제8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외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전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08.6.5>

②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④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관광단지개발자)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또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② 법 제55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란 제1항 각 호의 공공법인 또는 법 제2조제8호의 민간개발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기본계획)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항만재개발 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경계와 그 획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5.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서

6. 대상지역 안의 토지·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자료

7.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

-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특정한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광역개발권역에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개발사업계획(이하 "광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광역개발권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2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지정된 광역개발권역으로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거나 관계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중에서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한 광역개발계획을 제출받거나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회의)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소하천정비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3.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99.8.31>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에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 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6조(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물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의

- 승인된 사업계획 변경시에도 사업계획 승인시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되,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절차(주민의견수렴, 도시관리계획결정,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를 거치지 않도록 함
- 사업 및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 내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경미한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 함

○ 다만, 사업승인권자이자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는 경미한 사항의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관광진흥법 및 주택법은 경미한 사항의 범위가 20%이며,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법은 30%이며,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자체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경미한 사항을 20%로 반영은 문제가 없음

입법례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기본계획)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계획의 수립) ⑤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작성한 광역개발계획을 제출받거나 직접 광역개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형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

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 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④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3.9, 2008.3.14>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 다만, 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 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광개발기본계획의 범위에서 하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 부터 제8호까지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 제4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변경
 - 가. 관광자원의 보호·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의 면적(권역계획상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다목과 라목에서 같다)의 축소
 - 다. 관광지등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확대
 - 라. 지형여건 등에 따른 관광지등의 구역 조정(그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명칭 변경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등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 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4조제5호의 도면

의 의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특례가 인정됨
-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토지이용에 공법상 제한을 가하는 제도로써 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되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이 당해 용도지역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가 속한 구역에 따라 토지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됨
 - 지형도면은 지역지구 등의 결정 또는 계획된 사항을 개별지적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개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음.
 - 따라서 지형도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지구 등의 지정사항과 개별지적과의 관계를 일반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 구축한 지형도 데이터 중에서 최소한의 지형지물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구역지정 취지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한함으로써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장애가 되는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대부분의 법률이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 고시토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구역 지정시에 또다시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절차가 복잡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의 열람 등 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기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은 복잡다기한 토지구제를 최소화 하여 국민의 손쉬운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제정하였으나, 기존 제도(예, 농어촌 정비법 제10조의 농업기반정비사업지역, 농어촌정비법 제68조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등)의 활용만으로는 법률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추진계획

- 본 법안에서는 사업계획 승인과 동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고시토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 사업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사업개요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토지 등의 세목, 지형도면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토록 함

입법례

□ 「자연공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공원기본계획"이란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사업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수립하거나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한다.

-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주변지역은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의 총 면적이 20만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주변지역을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항만구역 면적의 100분의 100까지로 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업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항만재개발사업의 명칭·목적
2.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登載)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 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에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 해제의 사유

의 의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환매권) 보호를 위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시 사업개요(사업명칭, 위치 및 면적) 및 지정해제와 관련된 사항(지정 고시일, 해제 효력 발생일, 해제사유)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개발사업의 경우 구역을 지정하고도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경제적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구역지정 해제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 토지소유자나 대상지역 인근 토지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중단에 따른 타 용도로의 활용도 곤란할 수 있음.

추진계획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구역지정 해제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적정 시기에 구역지정 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원토지 소유자의 환매권 등 재산권을 보호

입법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5항의 규정은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개발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개발구역의 지정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항만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참조 : 질의회신(국토해양부 도시정책팀-국토해양부 홈페이지 FAQ '05.3.18)>

■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 선행여부

<질의>

-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체육시설의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지와 용도지역변경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경우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지 여부

<회신>

- 체육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하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체육시설의 결정은 모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동시 또는 별도의 결정이 가능할 것이나, 동시에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용도지역의 변경을 선행한 후 체육시설을 결정할 것인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판단·결정하여야 할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서 관리지역안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해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림청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보전산지 해제·고시를 선행하거나,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과 미리 협의되어 추후 해제되는 경우라면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할 것임
- 보전산지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로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기문당. P1-192)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 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
8. 식물재배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시행령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6.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 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의 의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으로 고시된 구역 안에서 타 용도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타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에게 신고 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규정하여 기득권자의 권리를 보호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사전에 방지함.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 등의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사업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 또는 면허 없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토록 규정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행위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허가 또는 면허 취득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본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장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안전성 확보.
- 본 조문과 관련하여 본 법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 절차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토록 조치함.

현황 및 문제점

-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보상 등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고, 이럴 경우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개발구역 지정 등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의 불법 개발행위는 철저한 사전 방지가 필요함.

추진계획

-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구역내 불법 개발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불법 개발행위 적발시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등 법적 조치를 통한 사업추진 원활화 도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서 재해복구사업 중 기능복원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도록 수정(소방방재청)

입법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① (생략)

② 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사력의 채취 등에 관하여 허가(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신고로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15일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과의 양립 가능성

2. 당해 공사 또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해당 개발사업의 공익상 필요성

3.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활용기간

④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자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된다.

⑥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업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항만재개발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⑤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산업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산업단지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행위 등의 제한)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
가. 비닐하우스 나. 양잠장(양잠소) 다.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라. 버섯 재배사(栽培舍) 마. 종묘 배양장 바. 퇴비장 사. 탈곡장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발전촉진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토석 채취
4. 발전촉진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 심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4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1>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정비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토석의 채취
 4.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자연녹지지역
 2.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생산녹지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4. 제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2.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3.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공고일 전의 토지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5.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③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의 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토지의 대표 소유자는 공유자의 인감을 찍은 대표자지정 동의서와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7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구역·단지·지구(이하 "지역·지구등"이라 한다)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지역·지구등 안에 그대로 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지역·지구등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능복원사업"이라 함은 피해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추어 피해시설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6.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

시행규칙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의

- 사업시행자가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초 사업계획의 충실한 수행을 담보토록 규정함.
-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첨부서류는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환경영향평가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 사업시행에서부터 완료 후 처분까지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토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시행자가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 승인시 승인권자의 의도와 다른 왜곡된 사업이 될 수 있고, 실현 불가능한 실시계획 수립으로 인한 사업추진 곤란 등으로 사업의 신뢰성이 떨어질 개연성이 큼.

추진계획

-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실시설계도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농업기반시설 귀속과 대체 등에 관한 계획서 등을 첨부토록 조치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사업추진과 사업의 실행력 제고.
-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포함(소방방재청) ⇒ 수용

입법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토지 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을 증진하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 제13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평가서의 작성내용·작성방법 등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 제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약(이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군·구본부장"이라 한다)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⑥ 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

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 그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사업시행 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의 의

-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있는 후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대한 공사착수가 가능함
-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및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대로 공사 준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보에 고시하여 일반인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실시계획 내용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지자체가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규정함.
-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송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현황 및 문제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이 상실됨.

추진계획

-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즉각적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사업시행자가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 사업명칭,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등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관보에 고시토록 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인허가의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입법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 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실시계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12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변경 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의

□ 승인된 실시계획 변경시에도 실시계획 승인시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생략토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신속성 확보

○ 사업 및 사업시행자 명칭변경,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총사업비 추정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범위 내에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경미한 사항은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간소화함

* 시행령안 제6조(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와 동일하게 규정 적용

입법례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실시계획)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주택법 등 다른 입법례에서도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100분의 20으로 정한 입법례

○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의 사업비 증감
2.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 관광진흥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1.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추진계획

□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승인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하도록 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규칙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의 의

-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토지의 출입이 요구됨
- 측량 등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 재료적치장, 임시도로 및 장애물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협의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에 의해 보상토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토록 규정함.
- 손실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사업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는 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 출입 및 보상에 관하여도 적용하되, 「수산업법」상의 보상규정을 준용토록 함.

현황 및 문제점

- 본 조문은 사업 시행에 따른 타인토지의 출입 및 손실보상에 대한 사항으로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의 고시(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함
-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움

추진계획

- 타인 토지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은 당사자와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완료되도록 하고, 부득이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할 경우는 최대한 조속히 신청함으로써 사업의 조기착수 및 당사자의 재산권 보호에 주력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허가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입법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8조 (면허어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 :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양식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 : 일정한 수심(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의 종류와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 수심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1. 어장의 수심(마을어업과 협동양식어업은 제외한다), 어장구역의 한계 및 어장 사이의 거리
2. 어장의 시설방법, 양식방법 또는 포획·채취방법
3. 양식물 또는 어획물에 관한 사항
4. 어선·어구(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 (허가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2. 삭제 <2007.8.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2.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하 "육상해수양식어업"이라 한다)

3.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종묘생산어업"이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구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이나 어구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

1.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사유, 양륙항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의 제한,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및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⑤ 행정관청은 제3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43조 (허가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2. 삭제 <2007.8.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무동력어선,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선의 안전조업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8톤 이상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2.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이하 "육상해수양식어업"이라 한다)

3.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생산한 종묘를 일정 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종묘생산어업"이라 한다)

③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 또는 어구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이나 어구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허가의 우선순위는 어업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을 허가하는 행정관청이 정한다.

1. 어업별 어업의 명칭,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유예, 허가의 제한사유, 양륙항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의 제한,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규모
 3. 육상해수양식어업의 양식물, 종묘생산어업의 종묘의 종류 및 육상해수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의 시설기준
- ⑤ 행정관청은 제3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46조 (신고어업) ① 제8조·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수리하면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아니할 것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

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2. 제5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 계류처분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3. 제47조제3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폐지신고를 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9조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37조제6호(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처분을 받았거나 그 사유로 인하여 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48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3조제2항에 따른 측량·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3. 제72조제2항에 따른 소하성 어류의 통로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사전에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면허받은 어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시설이나 그 밖의 사업장의 건설 또는 조업
2. 선박 또는 해양시설(「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0호의 해양시설을 말한다)
3. 해저광구의 개발 등

② 제1항의 오염발생시설의 경영자가 피해가 발생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한 때에는 피해 발생 당시의 시설의 경영자와 시설을 양수한 경영자가 연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1조 (보상금의 공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79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보상을 받을 자가 보상금 받기를 거절하거나 기피할 때
2. 보상을 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3. 보상의 목적인 어업권·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가 있을 때. 다만,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등록하거나 등기한 권리자 또는 소송 당사자는 공탁한 금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2조 (입어에 관한 재결)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하여 분쟁이 있거나 제42조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 신청을 받으면 제86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 하여야 한다.

제83조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 ① 어장의 구역, 어업권의 범위, 보호구역 또는 어업의 방법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그 관계인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4조 (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5조(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한 세부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상·보조 및 재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도시계획·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4.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⑦ ~ ⑨ (생략)

〈참조 : 질의회신(법제처 법령해석 07-0286, 2007 11.16)〉

-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편입 예정부지의 현황측량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가 토지출입 허가증만 발급받고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출입 허가가 유효한 것인지 및 위 경우 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제15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과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31.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 의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신청을 할 경우 타 법에 의한 관련 인·허가 사항이 포함될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일괄 의제처리 함으로써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 인·허가 등의 일괄의제처리는 사업추진 시 인·허가 등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각각 협의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사업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느 하나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전체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과 관련된 35개 호 41개 법률의 의제사항 규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타 법에 의한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 의견 제출기한을 30일로 한정하여 신속한 협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
- 협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인·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협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 함

현황 및 문제점

- 사업추진시 타 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관계부처 이해부족 등으로 협이가 곤란할 수 있음.

추진계획

- 사업추진시 타 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관련 서류의 철저한 분석 및 준비로 원활한 협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참조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과 의제조항의 필요성〉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제2조제6호 관련)

- 가. 「농어촌정비법」 제3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업사업,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
-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마.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 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의 제 사 항	필 요 성
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 제2조 제6호 사업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 제2조 제6호 사목 및 체육시설, 관광휴양단지내의 건축물 축조 등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제2조 제6호의 사업을 위한 저수지, 댐, 호소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 및 골재채취를 수반할 경우 인허가 의제필요

의 제 사 항	필 요 성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간척지 및 방조제 주변을 개발할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이 필요함 ※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 도비도 및 시화간척지 개발사업 등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방조제 및 간척지 주변부지를 개발할 경우 일부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제2조 제6호 바목의 사업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인·허가 등
7.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농업기반시설의 댐, 호소, 저수지 및 주변토지에 사금 등의 광물 채취를 위한 광업권이 설정된 경우
8.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제2조 제6호 사업을 위해 제22조에서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을 두고 있고, 사업구역에 편입될 경우 사용·수익허가 필요 ※ 인·허가 주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국한하여 필요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의 인가	○제2조 제6호 바목의 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도시관리 계획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등에 필요한 경우

의 제 사 항	필 요 성
<p>10.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 기반시설의 목적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p> <p>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p> <p>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p> <p>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p> <p>1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p>	<p>○ 제2조 제6호 가목 등의 사업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의 인·허가</p> <p>○ 제2조 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대부분 농지법상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 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함 ※ 농지법상 토지의 개량시설인 유지, 양·배수장 등도 농지의 범위에 해당됨</p> <p>○ 제2조 제6호의 사업추진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등</p> <p>○ 제2조 제6호 사업의 농수산물집하장, 공관장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관련 법률의 인·허가 사항</p> <p>○ 제2조 제6호 바목의 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 및 도시계획사업 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등</p>

의 제 사 항	필 요 성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제2조 제6호 사업의 농수산물집하장, 공판장 등의 물류시설 및 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등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제2조 제6호의 사업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자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진·출입에 필요한 사도를 개설할 경우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 산지, 해안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과 연결한 곳의 토석 채취 등 허가 등 필요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제2조 제6호의 사업을 위해서는 저수지, 댐, 호소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이 산지와 연속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부지에 공판장,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동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지정해제 등의 행위가 필요함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 제2조 제6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지역 및 임도, 암석지 등의 굴취 또는 채취에 필요한 경우 등 인·허가 사항
2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 제2조 제6호의 사업장에 들어서는 건축물 등의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등

의 제 사 항	필 요 성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은 하천과 연계되어 있고, -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수문), 배수 펌프장 등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점용 등 인·허가가 필요함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제2조 제6호 사업의 농수산물집하장, 공판장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관련 법률의 인·허가 사항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제2조 제6호 라목의 사업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사업 및 발전사업과 관련한 협의
2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제2조 제6호 사업의 농수산물집하장, 공판장 등의 물류시설 및 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우의 인·허가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제2조 제6호의 사업추진에 따라 사업지구 내 분묘의 이장 등에 필요한 경우 개장허가
2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2조 제6호 사목 및 체육시설, 관광휴양단지내의 건축물 축조 등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27.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2조 제6호 사업의 준공완료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지적변경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제2조 제6호의 사업장에 들어서는 건축물 및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제2조 제6호 아목 사업에 따른 체육시설설치 사업계획의 승인

의 제 사 항	필 요 성
<p>3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p> <p>31.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p> <p>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p> <p>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p> <p>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한다)</p> <p>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p>	<p>○ 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하고 있어 형질변경 및 전용허가의 의제가 필요함</p> <p>○ 제2조 제6호 사업지구의 지적측량에 필요한 측량성과의 사용</p> <p>○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를 병행하여 개발할 경우 발생한 폐기물의 소각·파쇄 등 처리시설의 승인 또는 신고사항</p> <p>○ 제2조 제6호 사업의 농수산물집하장, 공판장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관련 법률의 인·허가 사항</p> <p>○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하천과 연계되어 있어 동 법률상의 점용 등 인·허가의 의제필요</p> <p>○ 반농반어의 농어촌 구조상 농업기반시설이 항만주변이나 방조제(새만금 등)와 연계되어 있고, 제2조제6호의 사업을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사업과 병행할 수 있음</p> <p>※ 예 : 제2조제6호 마목의 관광, 라목의 풍력·조력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사업 등</p>

인용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 「건축법」

제4조 (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9. 「도로법」 제34조와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와 도로의 연결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⑨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20조 (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골재채취법」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구역이 광업권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결과 광물채굴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금지구역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방시설등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수질오염의 방지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2 이상의 골재채취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복구용·군사시설용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채취하고자 하는 것을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1.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신청자의 골재채취 능력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점·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浦落地)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干潟地)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土石)·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부두·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사용하는 행위
10. 「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 ②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이하 "점·사용허가"라 한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⑦ 관리청은 점·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 (협의 또는 승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또는 승인사항중 점·사용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로서 공작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6조에 따라 점·사용의 협의·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관리청에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실시계획의 신고의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면허)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 국토해양부장관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시·도지사

② 매립구역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2007.12.27,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⑤ 면허관청은 제6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⑥ 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7>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의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매립할 수 있다.

⑧ 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제15조 (실시계획의 승인 <개정 2007.12.27>) ①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은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12.27>

③ 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④ 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본계획과 권역계획을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인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④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제5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이하 "관광단지개발자"라 한다)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④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3호, 제61조 및 제6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제55조 (조성계획의 시행) ①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08.6.5>

②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자인 경우에는 관광단지개발자와 협의하여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④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6.5>

⑤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정부투자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개발자는 필요하면 용지의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민간개발자인 경우에는 제54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남은 사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광업법」

제21조 (동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 당시 출원구역이 동종 광물(同種 鑛物) 광구와 중복된 경우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이종 광물이 중복될 때의 불허가)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이종 광물 광구와 중복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각각 광업을 경영하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중복된 구역에 대한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석회석 광구와 석회석을 모암(母岩)으로 하여 묻혀 있는 이종 광물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이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4조 (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의 종류별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에 미달하는 때에는 광업권의 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7항에 따른 구역에서 광업을 할 경우 국가중요 건설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줄여서 허가하거나 광업권설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 (광업권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다만, 사업을 중단하기 전 3년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실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탐광(探鑛)실적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실적 또는 투자실적이 없거나 제83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경우
6. 제42조제3항에 따른 채광계획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2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8.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제4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광산보안법」 제15조의2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사용·수익권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⑤ 관리청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도시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대도시 시장"으로,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대도시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대도시 시장"으로 본다.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 제22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반시설 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3.28, 2008.12.29>
-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은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③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목적 외 사용에 관한 절차·기간 및 범위, 경비 징수 범위와 징수된 경비의 사용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농업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전용)된 때
2. 폐지하려는 농업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손괴)되어 농업기반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5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8조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② 시장·군수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려면 그 사업계획을 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농지법」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 「도로법」

제5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노선 인정의 공고)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하면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도로구역 결정) ① 도로 관리청은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도로구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 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면 설계도서, 자금 계획, 사업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 국토 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4조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그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상급도로의 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연결되거나 접속되는 하급도로의 연결구간 또는 접속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미리 하급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 유지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지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지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지설을 할 것

□ 「유료도로법」

제4조 (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로부터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1.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
2.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를 제외한다)가 있어 당해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아니하는 도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요하지 아니한다.

1. 고속국도
2.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3. 육지와 섬사이 또는 섬과 섬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비용의 원리금 총액(이하 "건설유지비총액"이라 한다)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공공교통상의 편익이 현저하게 증가한다고 인정하여 그 도로의 건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정지원(출자·출연 및 보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0.22>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유료도로공사의 공고)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및 공사의 구간·종류·개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유료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거나 공사를 폐지하는 때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환지(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6호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거나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1.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 ③ 지정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같은 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1호(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⑧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⑨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제안 절차, 제출 서류, 기초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3조제5항과 제6조를 준용한다.

⑩ 제2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권자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면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물류단지의 지정) ①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물류단지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시·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에게 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외의 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제3호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8호의 세부목록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주요 유치시설 및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계획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승인한 사항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를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도법」

제4조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사방사업법」

제14조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사방지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24, 2006.12.28, 2007.8.3>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2006.12.28, 2007.8.3>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유출 등이 예상되는 때·풀·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등) ①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입목(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제45조 (보안림의 관리 등) ① 보안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구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입목·죽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채취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할 수 있다.

제46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정목적은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안림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채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② 보안림 지정해제의 절차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보안림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제44조를 준용한다.

□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정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지(工事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법」

제13조 (착공신고) ① 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소하천정비법」

제10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소하천의 점용 등) ① 소하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4.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6. 토석·모래·자갈·죽목 기타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7. 소하천의 오손행위

② 제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내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내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지정·고시당시 당해 소하천구역안에서 소하천부속물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당해 소하천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수도법」

제17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①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9조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 (전용상수도 인가) ①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전용상수도의 설치자는 전용상수도를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그만두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 제5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을 말한다)의 배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 중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외의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사업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 중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사업주관자는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및 의견 청취의 절차, 대행기관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의 결정[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權原)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 이하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서 같다] 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⑨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7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지적법」

제27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초지법」

제5조 (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의2 (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9.27, 2009.1.30>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삭제 <2006.9.27>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 ⑦ 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측량법」

제25조 (측량성과등의 사용) ①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등을 간행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도등을 간행하고자 하는 자가 공공측량계획 기관인 경우에는 제29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97.1.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용한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지도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8.2.29>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량성과에 저촉되는 측량성과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③ 제2항의 경우에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각각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 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 관청

□ 「하수도법」

제16조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는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점용허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용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하천법」

제6조 (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 ⑦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⑧ 하천관리청은 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 ⑩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2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 ④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⑤ 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⑥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⑦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 ⑧ 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 「항만법」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②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농업생산 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 의

- 토지적성평가는 전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토지의 환경생태적·물리적·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과 개발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모든 개발 사업에 적용됨
- 사업계획 수립시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때에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 토지의 다양한 용도로의 전환을 통한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지 보전적성등급 우선 분류대상지역에서 평가지표를 달리하는 한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문화관광부 고시(2009-48호)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및 환경부 비점오염원관리 업무편람의 기준을 준용함

- 사업계획 수립시 오폐수처리구역의 지정 등 수질·환경을 보전하는 대책과 기술력 발달에 따른 신공법, 무동력,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개발계획을 통해 환경친화적 활용과 수생식물, 테마공원 등 주변경관 향상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되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용도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 그 용도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감안하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정 및 변경으로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건축제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6조)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함
 - 건축제한의 방법으로는 각 용도지역마다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는 방법(금지제한)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만을 규정하는 방법(허용제한)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택함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입안·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 계획수립지침」(건교부 '03.1)에 의거 「기초조사서」, 「토지적성평가검토서」, 「지구단위계획도서」, 「기본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부담계획」(필요시)을 작성해야 하는데 「토지의적성평가에관한지침」 별표3, 4에 의거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인 집수구역은 보전등급』을 부여토록 되어 있어 사실상의 용도변경 곤란, 다만, 지침 3-2-5 제(3)호에 의거 입안권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별도의 보전대책 강구 및 개발을 최소화하여 세부 평가가 가능토록 되어 있어 대표적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주변지역 활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토지적성평가의 주요내용

- 평가체계 I (1~5등급)

·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경우

- 평가체계 II (A~C등급)

·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계획 입안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기 위한 계획 입안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입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입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 제2호 바목에 따라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 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에서는 용도지역이 개발이 가능한 계획 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이라 하더라도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적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주변지역 활용이 곤란함

추진계획

□ 본 법률의 취지가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수질보전과 연계하여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 구체적인 별도의 보전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개발이익을 농업기반시설 유지와 수질오염 방지 및 개선에 적정하게 투자토록 하여 농업기반시설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강화함.

-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의 오염총량이 저감시설설치 등으로 개발후의 농업용 저수지내 오염유입이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적도록 조치
- 하수처리 예정구역의 지정 등
 - 개발지구내 오·폐수를 차집관로 등으로 집수하여 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고, 우수 등 비점오염원은 수질정화 습지 또는 저루지를 설치하여 정화 후 방류조치 등

□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제한 완화 규정은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삭제(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법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특례는 존치하고, 관리지역에 대한 특례는 삭제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려는 법률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건축제한 등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입법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동·식물 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제29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① 개발구역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등록체육시설사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상의 등록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도지사의 업무는 이를 관할 시장·군수의 업무로 본다.

④ 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부지면적 사용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①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발계획에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라 한다)의 매립목적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로서 그 매립목적의 변경이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된 때에 동법 제2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매립지의 매립목적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발계획의 토지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② ~ ④ (생략)

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전에 시행자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⑥ 시행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위치하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제9조의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의6 (「농지법」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참조 : 질의회신(국토해양부 도시정책팀 '05.3.12)〉

■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공고 후 구역변경 없이 개발계획변경시 토지적성평가 필요여부**

〈질의〉

-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에 대한 공고를 거친 상태에서 구역변경 없이 일부 개발계획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적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회신〉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 실시되는 것으로 동법률 부칙 제5조에 의하면 토지적성평가는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이미 국토이용계획의 입안내용에 대한 공고절차를 거친 경우로써 구역변경 없이 일부 개발계획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가 불필요한 것임. 다만, 입안내용에 대한 공고 후 구역이 증가되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부동산개발법률실무. 한국생산성본부 2008년 P.50)

제17조 (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의 의

- 관련법에 의해 부과·징수되고 있는 부담금은 해당법률에 따른 감면 또는 경감 규정이 있으나 일괄 적용이 어려운 관계로 제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감면된 금액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확보하여 본 법률의 목적 달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규정함.
- 조세감면 사항은 본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각각의 개별법 적용을 받도록 함.
-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림경영의 핵심재원인 관계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타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한 관계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

현 황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음
-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함),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함), 물류 시설용지조성사업, 온천 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과 화물터미널사업, 골프장 건설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임

- 부과 제외 및 감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에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상기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
- 개발부담금 면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등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함
 - 농업진흥구역 : 농업생산·농지개량의 행위만을 허용
 - 농업보호구역 : 오염물질 배출시설,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공장(1천㎡ 이상), 공동주택(2천㎡ 이상) 등은 금지
- 다음 각 호의 자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부하여야 함
 - i)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ii)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iii)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iv)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v)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대체초지조성비

- 「초지법」 제23조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의 전용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 i)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ii)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iii)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1)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애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등의 경우, iv)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초지를 전용하고 있음.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종합물류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함),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의 경우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인구가 10만명인 경우를 말함)에 해당함.

관련법 규정	명 칭	내 용	감 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발 부담금	해당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①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사업은 감면 ②공운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은 100분의 50 경감 등
농지법 제38조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 부과	①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전용
초지법 제23조	대체초지 조성비	초지전용에 대한 부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 특별법에 의한 감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 부담금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 주한 외국 정부기관 - 주거용 건물 -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문제점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하지 않고, 환수할 경우 부족한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항구적인 확보곤란
 - 토지투기를 위한 사업이 아니며 법률의 제정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움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가 대부분 농지법상 농지(저수지 등)를 포함함
 -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농지전용을 수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 진흥지역 내에서도 농지의 본래목적은 훼손하지 않고 개발을 통한 농촌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감면필요
 - 농지법상 토지의 개량시설인 유지, 양·배수시설, 농로, 제방 등도 농지의 범위에 해당되며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 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정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움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가 초지법상 초지가 포함되어 초지전용을 수반하는 경우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초지법」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하지 않고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할 경우 유지관리재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정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 등을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10만명 미만의 도시가 많아 교통유발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교통수요가 적어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임

입법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구역 안에서 기업도시의 조성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관리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의 의

- 각종 공익사업의 추진에는 용지취득이 수반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으로 원활한 용지취득을 하기 위하여 규정하되, 본 법안 제2조 제6호의 각 목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등 활용사업의 공익목적 달성을 실현토록 함.
- 사업계획이 승인될 경우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용·사용할 토지·건물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을 사업계획서에 추가하여 신속한 용지취득이 가능토록 함.

- 또한, 토지 수용·사용권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부여함으로써 피보상자에 대한 재산권 등 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피보상자에 대한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 보상기준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함.
- 토지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 황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토지의 사용 수용)에 해당하는 사업 범위로 제한하고 있음.
 - 해당사업의 범위
 - 관계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 철도, 도로, 수도, 학교, 도서관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등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사업 인정의 고시(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 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 급격한 지가상승에 따라 보상비의 증가와 보상업무의 어려움

-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과 더불어 정당보상 실질화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었으나, 이러한 민원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으로 불만이 야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많음.

□ 사유재산권과 생활권 신장으로 용지취득 어려움

- 사업추진시 법적용 형식과 절차 및 기준적용의 공정성이 요구됨.

추진계획

□ 사전에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확보(소유권 취득이나 사용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따른 소유권 침해의 요소를 최소화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함으로써 지가 상승전 신속한 토지수용 추진.

□ 토지 수용·사용시 당사자와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완료되도록 하고, 부득이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신청 할 경우는 조속히 처리

입법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3.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사업의 종류·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3조 (사업인정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이하 "사업인정고시"라 한다)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 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수용등) ① 시행자는 지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행자가 민간개발자(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법인의 경우에는 민간투자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한한다)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각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

③ 토지등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의 의

- 해당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는 그것을 공급하는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를 명확히 규정함.
- 사업시행자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지하로 설치할 경우에는 요청자와 공급자가 분담(2/1식)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규정함.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공급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기간 내에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되, 기반시설 설치범위는 구역 밖에서부터 구역 경계선까지로 규정함

※ 참고판례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1732호

현 황

- 법령규정상 「주택법 제23조」, 「도시개발법 제55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등 대부분의 입법례에서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통신 또는 난방 등의 공급자가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 시설	설치의무자	비용부담
- 도로 및 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전기, 통신, 가스, 난방	해당 공급자	해당공급자
- 전기간선 지중화	공급자	공급자와 요청자가 2/1식

문제점

- 기반시설공급자의 설치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지 않고 단순히 설치주체만을 규정할 경우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고,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범위에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전기·통신 및 지역난방시설이외도 도로와 상하수도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어야 함

- 「주택법」, 「도시재개발법」 등 유사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도 도로와 상하수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범위에 도로와 상하수도를 포함함

추진계획

-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논란 소지 불식
-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범위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을 준용토록 조치함.

< 기반시설의 설치관련 관련법 준용사항 >

(도시개발법 제54조)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 공급자
- 통신시설 : 통신서비스 제공자

- 전기·통신·가스공급 및 난방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설치시기 및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참조 : 질의회신(택지 30340-164, 1992 . 3. 2)>

■ 전기공급시설의 설치주체

<질의>

- 간선시설 설치범위 한계에 단지 안에 개설예정인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경우 그 도로까지 전기시설은 설치의무자가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한국 전력에서는 단지의 개념을 구역 전체로 해석하는 바, 그러면 사업구역 내 도시계획도로까지의 간선시설(전기)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회신>

- 주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별표6의 규정에 간선시설 중 전기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택지 또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단지 안에 개설예정인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도로까지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단지와 연결된 도시계획 도로까지의 간선시설(전기) 설치비용은 당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인 한국 전력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입법례

□ 「주택법」

제23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당해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 우체통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사업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그 사업지구 안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사업지구안에 1개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를 말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간선시설은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제1항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개발법」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①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전부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기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3분의 2,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3분의 1의 비율로 부담한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한다)까지 끝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의무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로서 시행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설치 사업이나 상하수도 설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기업도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3.31, 2009.9.3>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전기시설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폭 6미터 이상인 도시계획도로로 분리되는 개별필지 및 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개별필지등"이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 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3. 가스공급시설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개별필지등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5.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시설, 케이블시설은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최초 단자까지의 시설

제20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15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조(준공검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의 의

-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사를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 공사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변경인가를 받은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일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음

현 황

- 시행자가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시·도지사)에게 준공검사 권한을 위임하여 시행함.
-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함.
 - 준공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도면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추진계획

- 준공검사 신청 및 시행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공사를 마무리한 후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에게 준공 검사를 신청
 -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의 충실한 준비로 준공검사의 원활화 도모

-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준공조서, 지적측량성과도 등 준공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도면을 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준공검사 확인증

- 별지 제5호 서식의 준공인가사항 란에는 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를 첨부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의시 별도의 의견이 있을 경우 조치계획 등을 준공인가조건으로 별첨토록 한다.

입법례

□ 「농어촌정비법」

제99조 (준공검사) ①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을 끝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정비사업이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권자 또는 시행·사업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준공검사) ①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준공검사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 검사를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의 의

- 준공검사 실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함
-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철저한 사업관리가 가능토록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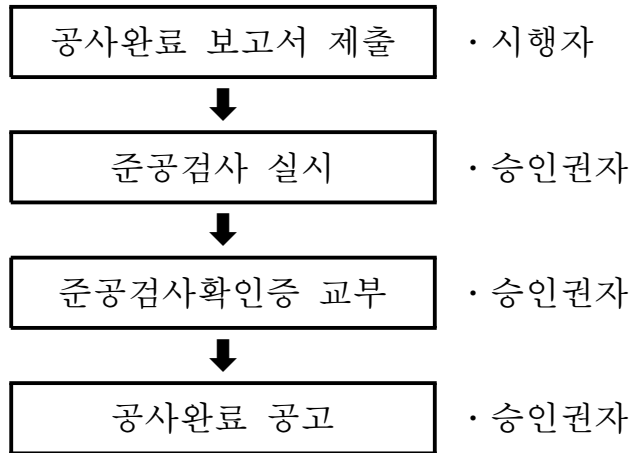
현 황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도 그 시행자는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 또는 공보에하여야 함
- 사업 명칭 및 위치,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의 용도별 면적, 준공일자 등 공사완료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함
- 공고에 포함될 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준공일자,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임.

추진계획

□ 공사완료 공고 추진 절차의 철저한 시행으로 사업의 신속성 및 신뢰성 확보

○ 공사완료 공고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준공검사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실시계획과 같이 완료되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조성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입법례

□ 「도시개발법」

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① 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 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공사완료공고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시·도지사의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제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제안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 지역에 항만구역 외에 주변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주변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60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를 사업계획제안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의견

⑥ 사업계획제안자는 시·도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사업계획 제안자에게 사업계획의 수용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자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⑧ 국토해양부장관의 제1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은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으로 본다. <개정 2008.2.29>

제2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 의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내 국·공유지중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조치함.
- 이는 행정재산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되, 공공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행정재산의 처분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계 규정(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구조상 사업시행자가 1개에 불과하다면 경쟁입찰이 무의미 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로서 원활한 처분방법이 필요함

- 국·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조치기간을 명시(30일 이내) 함으로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가능토록 규정함.

현 황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국·공유재산의 보호 및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개별 특별법에서 다수의 특례규정을 두어 이들 재산의 관리·처분을 규정
- 이에 따라 행정재산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을 제한하고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음.
- 또한 잡종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으나 공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음.
- 용도폐지의 신청은 사용 용도별 처리부서에 신청하고 용도폐지 재산은 잡종 재산으로 보통 행정 관할 부서인 재무관련 부서에서 대부 또는 매각을 하고 있음.

추진계획

-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국·공유지에 편입된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계획함.
-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있는 경우 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함.
- 사업시행자가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당위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논리정립 및 설득으로 사업추진 협조 요청.
-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 이는 협의 요청 시 관계행정기관이 반드시 용도폐지 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다른 법률의 일반적인 입법례를 감안하여 법문을 “협의를 관하여”로 규정함

<다른 법률의 입법례>

< 국·공유지 처분제한 등에 대한 입법례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7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법례

□ 「국유재산법」

제12조 (관리계획) ①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31>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 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리청은 제2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고, 당해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에 한하여 이월·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④ 관리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계약의 방법) ① 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7.8.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지명경쟁·제한경쟁에 붙이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개찰·낙찰선언을 한다. 이 경우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 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9조 (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공유지의 협의매수 불능시 처리지침

사업구역내 편입된 국·공유 잡종재산은 매수하는데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또한 수용·재결 후에도 미매수 국·공유지로 남아있는 등의 사업시행상 토지 매수의 조기종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리처분권자(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참조)에게 일반 사유재산과 같이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하고 동 관리청 또는 관리처분권자가 국유재산법 등의 규정을 이유로 협의에 불응할 경우는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다(한국토지공사, 1987.12.18 주용(2)1611-5590호 참조)

<참조 : 용도폐지된 저수지 현황 및 개발절차>

□ 도시화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를 지역여건, 개발환경 및 개발구상안에 맞춰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제반 절차에 따라 개발

○ 개발구상안(공원, 택지, 관광휴양 등)별로 적용법률, 절차 및 규제가 각기 다름

□ 公社가 보유한 저수지 중 용도폐지된 저수지 현황('08.12말 기준)

○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환지예정 중에 있거나 개발여건이 미성숙된 곳

- 칠곡 중미지, 포항 가마골, 창원 용추지, 평택 장지, 철원 이평지, 보은 한각곡, 보성 사천지, 청송 마호지, 하동 신전2 저수지

○ 지역주민 등의 목적외 사용임대 및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따라 매각계획

- 목적외 등 임대(4) : 옥천 지곡지·용방지, 음성 단양지, 순천 남수지
- 매각계획 : 옥천 보답곡, 순천 마동지·조례지, 김해 대라지, 하동 정서하지

※ 그 동안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된 저수지 72개소에 대하여 경지정리 사업구역편입 11개소, 매각 18개소, 지자체에 43개소를 이관함

〈민간과 공동으로 조성한 개발사례〉

추진절차	해당기관	관련법률	비 고
용도폐지 승인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비법	
↓			
대체시설 설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정비법	필요할 경우
↓			
진흥지역 해제	농림수산식품부	농지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			
세부설계	사업시행자		
↓			
형질변경 허가	지방자치단체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 준공	사업시행자	사업관계법률	기반시설 등
↓			
지목변경	지자체(지적공사)	지적법	토지이용현황 반영
↓			
건축 등 인허가	지방자치단체	국토계획법(건축법)	
↓			
건축 준공	사업시행자	※유통및가격안정법	개별법률 적용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제23조(유지관리재원 조성)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조(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의 의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나,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충분한 국고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족한 유지관리재원의 항구적인 확보방안 마련이 절실하고,
- 4,900만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농업인의 안전영농 기반인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및 개발이익을 통해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음.
- 유지관리 재원조성의 기준은 별표 1의 총수입 및 총사업비 구성항목의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감한 금액의 이익금으로 함

현 황

- 다양한 작부체제로 농업생산구조가 변화되고 도시의 확대, 농촌의 도시화, 도·농 복합지역의 확대로 과거 논농사 위주의 관개용수에서 농촌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축산용수, 환경용수, 여가용수 등 다양한 용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 노후된 수리시설물과 더불어 신규 대형화·전자화 되는 수리시설물의 증가 및 농촌인구 고령화와 감소로 인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2009년 유지관리비용 약3,000억원 중 국고보조가 1,524억원 (50%)으로 매년 유지관리재원 부족분을 공사의 자산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하였으나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 시·군의 경우 시설물의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심하고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비와 국고(지방분권세)로 충당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사전 보수·보강이 어려운 실정임.
- ※ '06년 총액 1,050억원, 국고 30, 지방비 1,015, 자부담5

추진계획

- 사업시행자로부터 유지관리재원 징수
 - 사업시행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제출한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 조성계획을 토대로 재원 징수
 - 농업생산기반정비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이 법 제24조에 따른 용도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도모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에 관하여 추정수익을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차감한 이익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안정적 재원확보 기반 구축
 - 별표 1의 유지관리재원 산출기준 중 일반관리비는 기획재정부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 제12조에 따른 일반관리비를 준용하여 해석한다.

입법례

□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0조 (공사의 회계 특례)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의 회계는 따로 계정을 설치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운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계정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공사가 소유하는 재산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토지로서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2. 법률 제5759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농지개량조합법」에 따른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공사가 승계 받은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의 장부상 가액(價額)에 해당되는 금액
3.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중 제4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④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사관리지역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용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취득

⑤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다만, 주권, 신주인수권 및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은 제외한다.
 3.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에 대한 재개발투자
 4.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⑥ 공사가 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9]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8조 (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분석자료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 결과가 재정자립도·인구증가율 등 지역별 낙후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초과이익의 범위 안에서 시행자에게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해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시 개발이익 산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개발이익의 재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이익을 재산정한 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의 설치 및 무상양여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개발이익의 추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4조(유지관리재원의 관리) ①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 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3.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의 의

- 유지관리재원을 시설관리자가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시설물관리계획수립 및 소요비용을 예측가능토록 하여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책무를 부여토록 규정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과 토지등의 취득 및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질오염 심화 우려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양질의 농어촌용수 공급기반 확보로 고품질 우수농산물생산기반 구축에 기여토록 규정함.
-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현 황

-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가 확대되는 추세인 반면 일부 용수원의 수질기준 초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거나 불허되어 민원발생
 - 공사 국정감사시 수질오염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취소 및 불허관련 지적
- '07년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결과
 - 수질오염 주요 원인은 상류의 토지계·생활계 및 축산계임.

시설수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492개소 (100%)	158 (32.1%)	143 (29.1%)	1 (0.2%)	188 (38.2%)	2 (0.4%)

○ 수질조사 결과 101개소(20.5%)가 농업용수 수질기준(Ⅳ) 초과

시설수	Ia	Ib	Ⅱ	Ⅲ	Ⅳ	V	Ⅵ
492개소 (100%)	- (-)	33 (6.7%)	104 (21.1%)	86 (17.5%)	168 (34.2%)	56 (11.4%)	45 (9.1%)

추진계획

□ 농업용수 수질보전을 위해 수질오염 예방적 수질관리 강화

○ 정기적인 수질실태조사

□ 지속적으로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를 대상으로 친환경적 수질개선사업 추진

○ 수질개선 대상 69개 저수지중 2013년까지 시급한 53개 저수지 사업시행

입법례

□ 「주택법」

제45조 (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의 내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취토장: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려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④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없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준설 사업으로 조성한 자갈, 모래 등의 부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오염물질이 흘러들어서 농어촌용수가 오염되어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령과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2. 「하수도법」 제25조제2항, 제33조, 제40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제3항
4. 「지하수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용수 오염으로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것이 우려되면 농어촌용수의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업용 저수지 및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2. 농경지에서 발생하거나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3. 「지하수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인한 농어촌용수의 오염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0조 (농업자원의 보전 및 농업환경의 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업용수, 대기등 농업자원을 보전하고 토양개량, 수질개선 등 농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업용수 오염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및 제16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 측정하여야 하며,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하는 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하천구역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당해 관할 구역 안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당해 관할 구역 안의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요인
4. 환경의 질의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③ (생략)

제6장 보 칙

-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 의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목적의 충실한 이행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승인권자의 지도와 감독이 가능토록 규정함.
- 시설물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공공성을 유지토록 함.

현 황

-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부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정부조직법 >

-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차관(제25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으로 보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 또는 차장(국무총리실의 차장을 포함한다)은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관 또는 차장이 2명인 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그 기관의 장, 차관 또는 차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 ⑤ <생략>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 또는 사무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 제13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위탁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제점

-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을 때에만 지도·감독이 허용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무리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나 법정 요건과 절차를 생략한 권한행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추진계획

-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승인권자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휘·감독권 행사로 본 법안 취지의 충실한 이행 담보

입법례

□ 「농어촌정비법」

제75조 (지도·감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41조 (지도 및 감독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시설·설비, 장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설·설비의 개선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2. 학원등 설립·운영자

3. 제10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학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학원등에 출입·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의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에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지도와 감독)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원본부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지원본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등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의 의

-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부담의 원칙과 특례를 규정
- 도로, 상수도·하수도, 공원 등의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가 곤란한 시설인 경우는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현 황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개발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함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음

-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행정청인 시행자는 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다만,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전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상 특별회계의 보조·융자의 범위

보조범위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 법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조사·연구비 4. 법 제60조 제1항 제6호의 경비

융자범위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추진계획

- 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규정을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활성화 도모

입법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비용부담) ① 도시공원·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및 녹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도시공원·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② 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제1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다른 공작물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 당해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설치·관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녹지를 관리하는 행정청과 그 특정원인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밖의 시와 군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재정이 있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한다) 안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와 개발사업시행자 간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시·도
 2. 전기시설·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역에 전기·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날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④ 개발사업시행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도로 또는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에 그 설치사업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에 관한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비용의 보조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2.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가운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
3.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

□ 「항만법 시행령」

제73조(비용의 보조 등)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항만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도로·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중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6.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광역상수도시설 등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항만재 개발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항만배후단지 및 사업구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항만재 개발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7조 (보조 또는 용자의 범위) 법 제59조에 따른 국고에서의 보조 또는 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의 보조 또는 용자가.
 - 가. 항만·도로 및 철도의 공사비
 - 나. 공원·녹지의 조성비
 - 다. 용수공급시설의 공사비
 - 라.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비
 - 마. 도시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의 공사비
 - 바. 이주단지의 조성비
 - 사. 그 밖에 도시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호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공사비
2. 법 제11조제1항제1호 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제1호 각 목의 비용의 용자.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7호의 시행자에 대하여는 용수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과 연결하기 위한 도로의 설치비용의 전부와 하수도시설 설치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행정처분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

제20조(행정처분 고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제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의 의

- 행정관청·행정기관등 행정주체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행정처분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별도의 근거가 법률에 존재해야 하며, 행정처분에 의한 면허·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 및 그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이 필요함.
-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함
-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규정하고, 행정처분시사업의 명칭, 위치,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승인(제5조), 실시계획의 승인(제11조 및 제12조) 등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행위 불이행이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함.
-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제6조)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지 않고 법률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추진계획

-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통하여 관련 허가, 승인 등을 취소하고 고시함으로써, 사업지연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의 피해 등을 최소화

입법례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항만재개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행정처분)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 의

-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제도·정책 등을 제정·수립·변경하는 경우 정확한 판단자료를 얻고, 이해관계인에게 변명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처분 등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학식·경험을 가진 일반인의 의견청취 규정을 두고자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위하여 허가 또는 면허(제9조)를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 법률에 따라 행하는 허가·면허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제재에 앞서 구체적인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 소명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추진계획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처분 및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조치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정처분을 행한 경우는 처분내용을 고시

입법례 및 참고판례

□ 「행정절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2.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4.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판례 1 : 식품위생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령 같은 법 제58조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인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문서를 청문일로부터 5일전에는 발송하였다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취한 위 청문절차는 위법하며,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위 영업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대판 1992. 2. 11, 91누11575 : 법률이 정한 청문통지기간 준수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판례 2 :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에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2. 10. 23, 92누2844 : 청문통지기간을 위반한 청문에 대한 하자치유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제29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1.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
12.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의 의

-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양하여 수입·수탁기관의 명목과 책임으로 그 행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목적은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제정 법률에 따라 신규로 부여받은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필요로 함.
- 사무의 적절한 분담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도모

추진계획

-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변경)고시, 준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

입법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력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제3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의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자에게 상당한 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예고함과 아울러 현실적으로 그러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 그 위반자에게 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규정함.
-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처분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처분을 받았거나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승인 등을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음.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주변부지 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입법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한 자
2.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42조 (벌칙)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2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분석자료에 대비한 개발사업시행의 결과를 제출한 자 또는 의견을 제출한 회계법인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허가 없이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

□ 「도시개발법」

제8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제8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3. 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의

- 양벌규정은 형사법상 자기책임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양벌규정을 행정처분의 근거로 규정한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요구됨.
- 법인에는 공법인인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가”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국가를 제외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을 위반한 때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처벌의 규정을 둠
- 제30조 및 제31조의 벌칙규정은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의미를 가질 경우 실제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 등을 받고 있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사용주이므로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장래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하여도 형을 과하여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벌규정을 둠.

참고판례

- 단서조항의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조항을 신설함.
- 종업원의 업무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상 명백한 의미와 달리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법정형에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에 반한다.(2007. 11. 29.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입법례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52조 내지 제54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제140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의 의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활용하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별인 과태료 규정을 두어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 또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과하는 일종의 제재로서 벌금보다 가벼운 제재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태료 금액을 80만원 이하로 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관철하고자 함.
- 개별 법령에서 통일 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설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추진계획

-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공공성 확보
-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농업생산기반 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어 사업시행자의 조사·측량 방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과도한 보상금 등을 이유로 토지에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애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한 제도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입법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3. 제13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4.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3.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호·제4호 및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이 각각 이를 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출입한 자
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를 출입한 자
4. 제15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과·징수절차

①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부여 → 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③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 ④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 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하여 부과처분에 이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납부신속 유도 → 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 ⑦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재판에 의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그 액수 결정

참고판례

- 현재 대법원 판례의 경우 과태료 부과 요건으로 고의·과실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고 있음
 -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0.5.26 98두5972)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36번 다음에 237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	----------------------------------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의 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신설할 경우 다양한 지역·지구 등이 누진적으로 지정·운용됨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이 남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일반 국민의 토지이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수준에 맞추어 기본법 별표와 동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고 있음
- 부칙에서 기본법 별표를 개정하여 법률 간의 충돌과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지역·지구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 등 토지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형도면 고시 등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8조에 따르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기본법을 개정함
 - ※ 해당법률에서 직접 지구를 지정할 경우 기본법 별표, 시행령에 위임하여 지정할 경우 기본법 시행령, 기타 하위규범에서 지정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지구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경우 기본법 별표를 개정함

별표 및 별지서식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1호	80만원
2. 법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2호	80만원

[별표 1]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조성의 기준

유지관리재원은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조성한다.

2. 산출방법

가. “총수입”은 다음의 매각수입(분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수입 및 직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매각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따른 실수입액
- 2) 임대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임대에 따른 실수입액
- 3) 직영수입: 사업시행자의 직영사업에 따른 실수입액

나. “총사업비”는 다음의 투자사업비, 임대사업원가, 직영사업원가 및 자본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1) “투자사업비”는 다음의 용지매수 및 보상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 토지 및 시설 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권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나) 조사비: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다)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라)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마) 일반관리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등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바) 그 밖의 경비: 환경영향평가비, 잡지출(雜支出), 세금, 공과금, 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합계액

- 2) “임대사업원가”는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 3) “직영사업원가”는 직영기간 중 직영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 4) “자본비용”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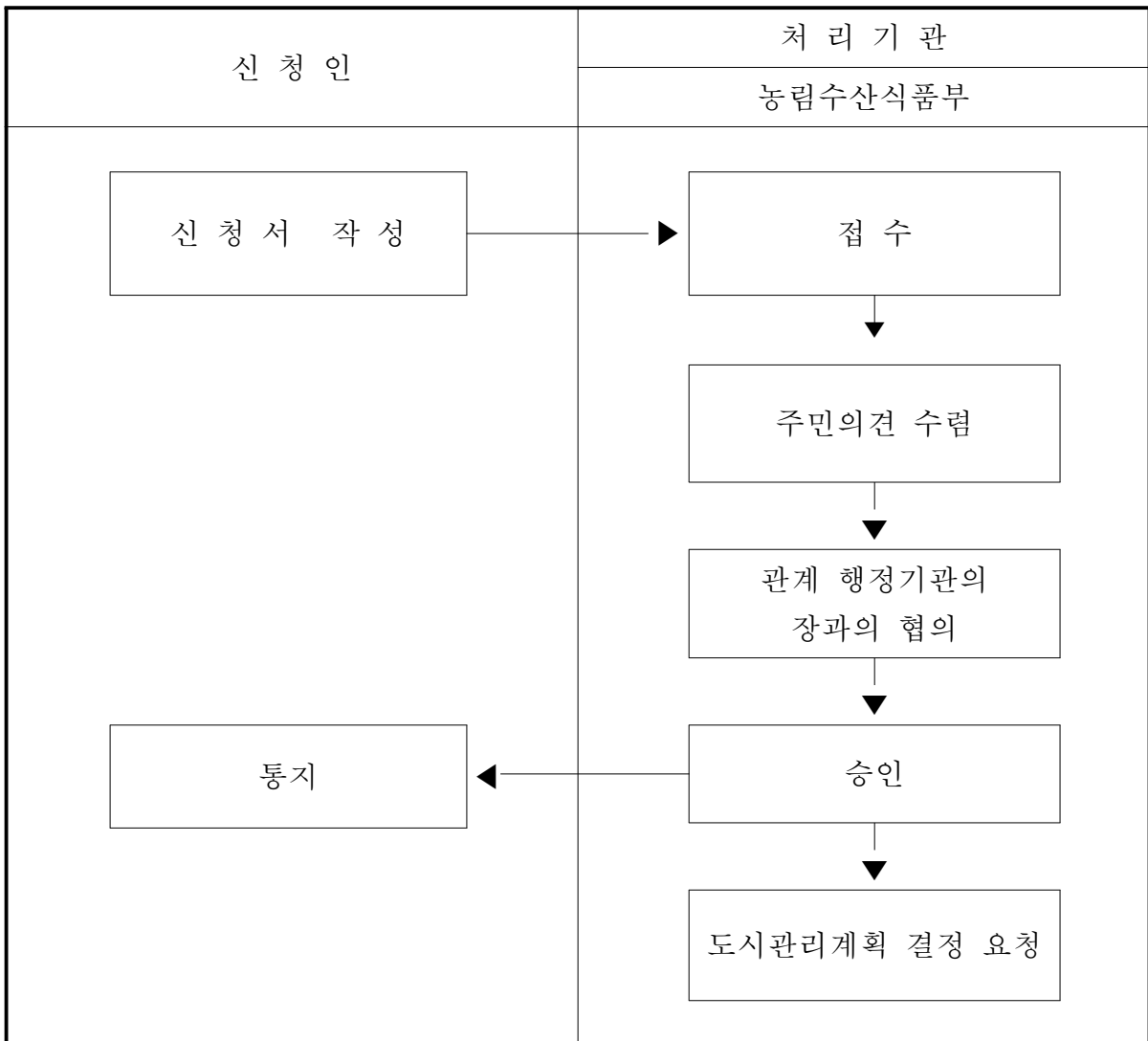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처 분 기 준	
		1차	2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나.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2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이전 또는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마.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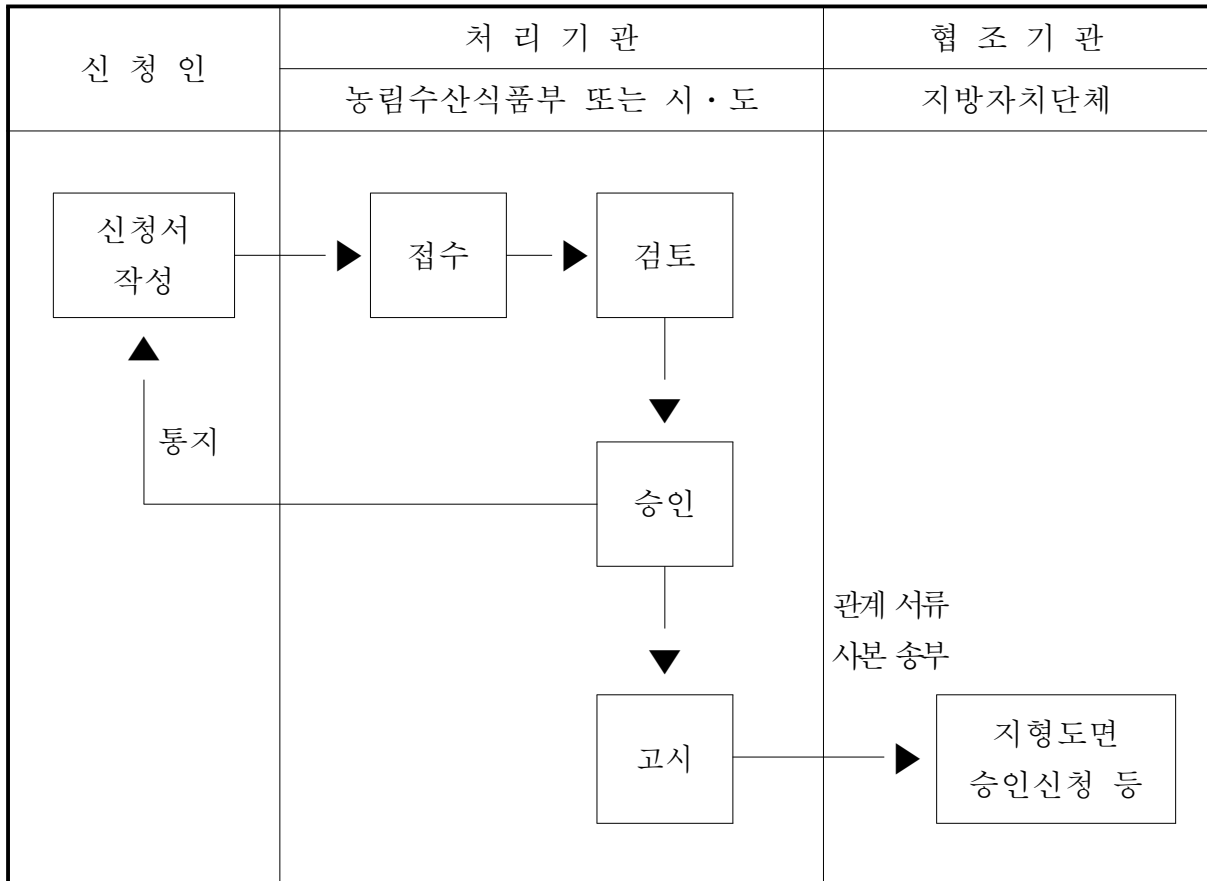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사업시행자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사업명칭									
대상지역	위치						면적	m ²	
기본방향 및 개요									
사업시행 예정 시기 및 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	<input type="checkbox"/> 저수지 <input type="checkbox"/> 방조제 <input type="checkbox"/> 양수장·배수장 <input type="checkbox"/> 기타								
토지이용계획 (m ²)	용도별								
	면적								
변경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따라 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의 신청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제10조제1항 <input type="checkbox"/> 제12조 본문 <input type="checkbox"/> 승인 <input type="checkbox"/> 변경승인		
년 월 일 신청인							에 을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 1부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1부 3.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1부 5.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1부 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1부 7.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앞 쪽)

제 호

신 분 증

(유효기간: ~)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m²]

(색상: 연노랑색)

(뒤 쪽)

신 분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측량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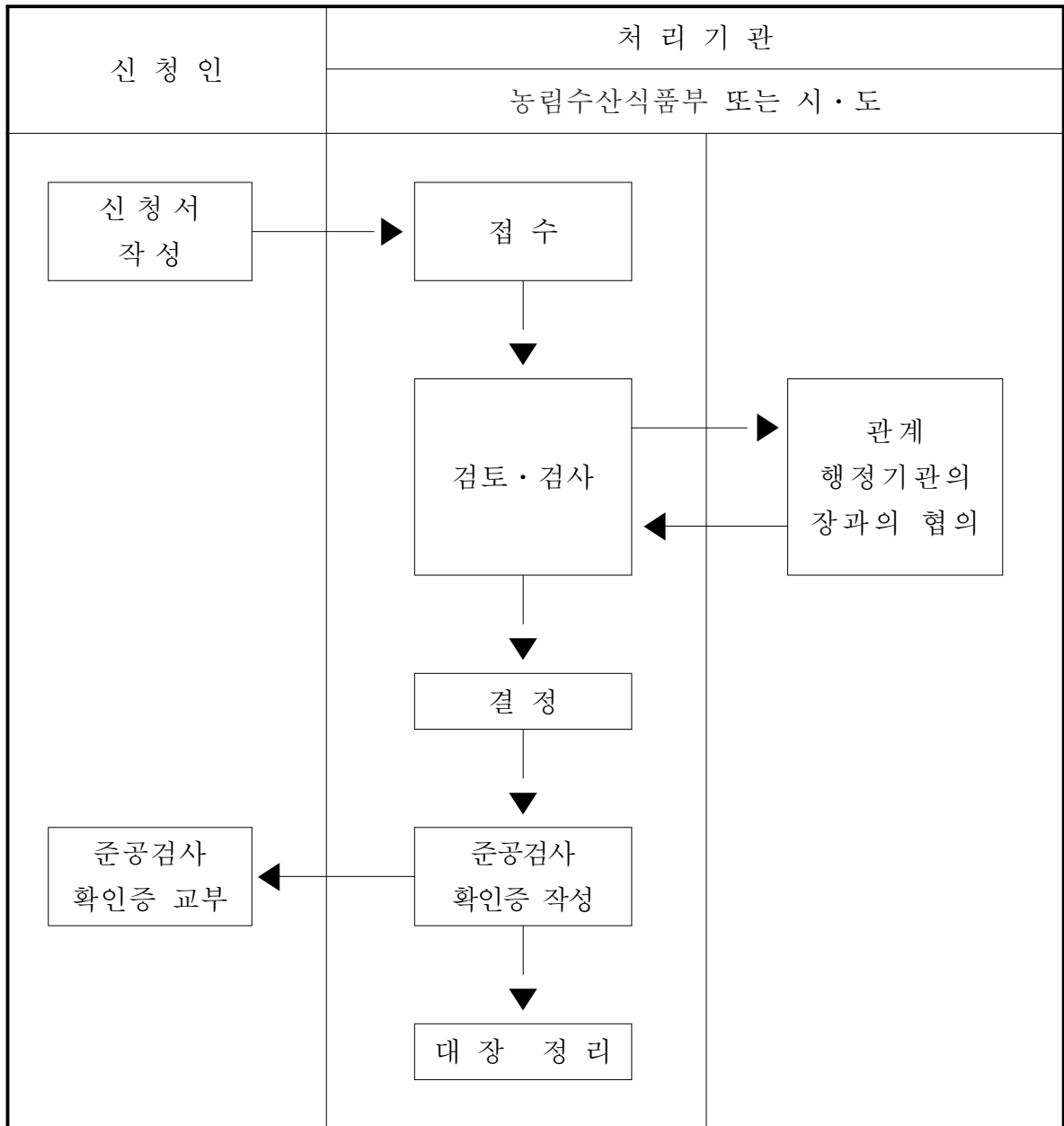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제 호

준공검사확인증

기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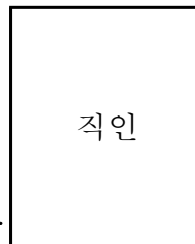
주 소: (전화번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업명칭:
2. 실시계획 승인일:
3. 사업위치:
4. 준공면적: m²
5. 준공 연월일: . . .
6. 준공검사 사항(확정 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Ⅲ

참 고 자 료

1. Q&A
2. 언론보도 및 기고문
3.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
4. 기타 참고자료

1. 법 제정으로 인한 효과는?

-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농업기반 시설 유지관리 재원의 확보 및 이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의 수준 제고 기대
 - 시설 개보수와 농업용수 수질개선 등을 통해 농업 용수 서비스 개선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농어촌 환경의 유지·보전 가능
 - 용도폐지되거나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 및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여 난개발 방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농업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원 창출 가능

2.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사유는?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지관리비용 부족으로 많은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 부족한 유지관리비용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확보 방안 필요
- * 저수지(17,649개소) 중 1945년 이전 설치된 시설(9,359개소)은 53%

* 한국농어촌공사 유지관리비용 현황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소요액	2,666	2,732	3,109	2,937	3,121
국고보조	1,413	1,483	1,528	1,482	1,503
자체총당	1,253	1,249	1,581	1,455	1,618

- 주 5일제 등으로 도시민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여러 법률에 따른 규제 및 복잡한 행정 절차로 개발에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조항>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안 제5조)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의 의제를 하여 각종 법률에 의한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1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례조항을 두어 “토지의 적성평가 및 건축제한 등”에 관하여 별도의 보전대책을 수립한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사업 시행자를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 주변지역활용사업은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이 법안의 제정 취지는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여
 - 농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아닌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소유권·점사용 허가 등의 권한이 시설관리자에게 있어,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는 사업 시행이 어려움
- 또한,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있어,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투자자가 사업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사실상 전무함

4. 사업범위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저촉되는지 여부?

- 주변지역활용사업은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농어촌공사는 기본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농어업을 2·3차 산업과 융복합화 하고자 하는 농정패러다임에 부합되도록 추진
- 주변지역활용사업의 주요 목적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는데 있고,
 - * 수익금의 사용범위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등으로 한정(안 제24조)
- 사업의 지역적 범위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공공기관의 역할과 중복될 소지가 적음

5. 사업범위가 한국농어촌공사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 이 법의 제정 취지는 농어촌공사 본연의 업무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자원 확보이므로 농어촌공사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음
 - * 수익금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수질개선 등으로 한정(안 제24조)
-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2.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업

6. 택지개발사업 삭제(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입장은?

-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변지역활용사업은 주로 농어촌지역이 위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활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택지개발사업을 삭제함이 타당
 - *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토지적성평가를 달리하여야 하는 이유?(안 제16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호소, 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인 집수구역은 보전등급을 부여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개발이 곤란함
-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별도의 보전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기준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난개발 등의 우려는 사실상 없음

8. 건축기준을 달리하여야 하는 이유?(안 제16조제2항)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에서도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9. 주변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하위법령에서 주변지역을 저수지 주변지역의 범위를 보면 1,000만 m^3 이상 2km, 100만 m^3 이상 1.5km, 10만 m^3 이상·방조제 1km 이내로 하고, 1천 마력 이상의 양수장·배수장에 대하여는 0.5km 이내로 함

10. 이 법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관되는지?

-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으나
-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될 것이라고 봄
 - 우리부에서는 4대강 주변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치수 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지역명소화를 추진할 계획임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각종 법률에 따른 인·허가의제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11. 수변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지?

- 농업기반시설의 본래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시설의 보수·보강과 연계하여 개발
 - 시설의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시설 설치 등의 사유발생시 시도지사의 승인으로 용도폐지 후 다른 목적으로 활용
 - 목적외 형태로 운동장, 자전거도로, 관찰테크 등 제약된 범위내 활용(건축물 등 영구시설물은 설치불가)
- 기반시설 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수질환경 보전과 농업기반시설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난개발 사례〉



12. 어떤 사업이 가능할 것인지?

- 수변개발을 통한 "Water-Renaissance" 물꼬를 통해 은퇴자의 유입을 유도하고, 도·농교류 촉진과 농외소득원 창출을 위해 농어촌경관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계획임
 - 전원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민속체험마을 등 농촌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도시민이 체험·휴식할 수 있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농산물가공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개발수요와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농어촌복합단지 등 다양한 모델을 사업계획 수립시 제시

〈개발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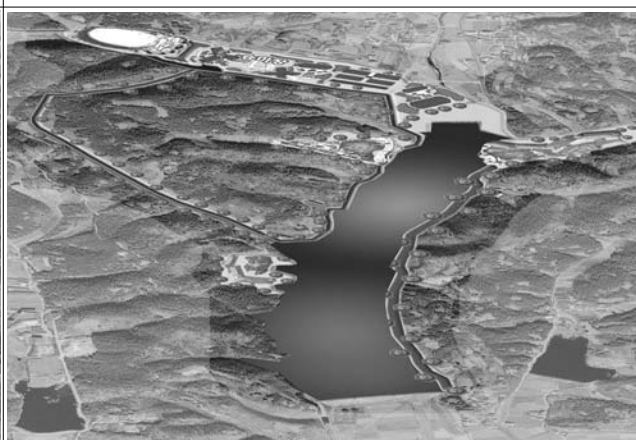
농수산물 유통 판매단지



신·재생 에너지단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나주호 워터파크)



승마사업 등 관광자원개발

13. 수변개발사업을 개별법으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장점은?

- 개발이 가능한 용도구역의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규제완화 및 각종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사항의 일괄의제처리로 절차 간소화
 -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두어 30만톤 이상의 호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서는 하수종말처리 시설 등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토지의 적성평가지표 및 기준을 달리하도록 함
-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제한 완화

14.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업추진시 개발계획의 충돌 가능성은?

- 사업계획은 농업기반시설관리자(국가, 지자체, 공사)가 수립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승인시 농식품부장관은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음
- 개발계획이 중복될 경우 발생하는 이익금의 사용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역할분담 등 상호 협력하여 법률제정 목적달성
 - 부지제공, 자본투자, 시설계획, 임대 및 운영·관리 등 역할분담
-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증가에 따른 세수확보 등 상호 충돌 없이 상생할 수 있음

15. 용도구역 결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의 보호 방안은?

- 활용구역의 사업은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임
- 필요할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등을 거쳐 법·제도적 보완을 하면서 추진
- ※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또는 결정을 요청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농지법제34조)〉

농지구분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농업진흥지역안	3만㎡ 이상	3천㎡~3만㎡	3천㎡ 미만
농업진흥지역밖	20만㎡이상	3만㎡~20만㎡	3만㎡ 미만

<참고 1>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 배경

- 세계 각국에서는 공공부문 개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
 -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필요

□ 추진 방향

- 민영화 : 민간과 경쟁하고 있거나 경쟁 가능성이 높은 기관은 민간에 매각
- 통폐합 : 동일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기관의 단일화
- 기능조정 : 비관련사업이 과다한 기관은 주된 기능 수행 기관으로 일원화
- 경영효율화 :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조직·인력 감축
- 출자회사정비 : 공공기관에서 출자한 회사의 지분 정리 및 관리제도 개선

□ 대상 기관

- 305개 공공기관 및 공적자금 등을 지원 받은 14개 기관

□ 주요 내용

- 민영화(43개) : 농지개량, 한국토지신탁 등 매각
- 경쟁도입(2개) :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관련 시장 개방
- 통폐합(43개→17개)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통합 등
- 기능조정(20개) : 한국관광공사의 기능 재편 등('12년부터 관광단지 개발 등 비핵심 기능을 중단하고 관광진흥기능만 수행)
- 경영효율화(69개) : 한국농어촌공사(△14.3%), 농수산물유통공사(△10.6%) 등의 인력 및 조직 감축
- 출자회사정비(273개) : 한국전력의 LG파워컴 지분 매각 등

대한민국 정책포털
korea.kr



저수지 주변지역을· 지역활성화의 원동력으로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른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은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이어져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소득 증대는 물론,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유지관리 재원으로 재투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09년 6월 9일 제정·공포되었으며,
 -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법령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특별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개발 관련 법률의 인·허가 의제 처리 및 「국토계획법」에 관한 특례 규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도록 하여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 사업구역 내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발에 따른 행위 제한을 대폭 완화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관광단지개발사업, 체육시설업 등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이 갖고 있는 어메티니를 활용한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체육시설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 * 주변지역은 총저수용량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수지, 동력규모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배수장 및 방조제로부터 0.5km~2km 범위내로 제한하였으며,
 - *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유지·관리에 제약을 주지 않는 지역,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지역, 농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 등으로 한정하였다.
 - * 사업계획 수립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③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④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화하였다.

저수지 주변도 관광단지로 개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내년 6월부터 전망 좋은 저수지 주변에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저수지 같은 농업 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해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주택건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토지 적성평가 등에 특례를 뒀다.

또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금은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 및 농어촌용수 수질 개선 비용 등으로 써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이라며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개발해 농외소득을 늘리도록 하면서도 난개발을 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10일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또 각종 농어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논.밭.저수지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농가 정비, 전원마을 조성, 뉴타운 등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괄한다.

개정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 소유자 등으로 확대해 민간인도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 민박 사업을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농촌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꾀했다.

또 경지정리기본계획 수립 권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권한의 일부를 장관에서 시.도지사,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했다.

아울러 농어촌 정비사업 시 농어촌 경관 관리계획을 세워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흉물스럽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농어촌 산업 관련 규정을 신설해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특화품목 육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YTN 뉴스

저수지 주변도 관광단지 개발

2009-06-14 11:52

내년 6월부터 전망 좋은 저수지 주변에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저수지 같은 농업 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해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과 주변 지역에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주택건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법은 하위 법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10일 시행됩니다.

농식품부는 또 각종 농어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정비법'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한겨레

2009년 06월 15일 (월)
26면 종합

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개발 길 열려

농림수산식품부 특별법 공포

내년 6월부터 전망 좋은 저수지 주변에도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길이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저수지와 같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주변 지역에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주택건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업체나 개인은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에 동참하는 조건으로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특별법은 이와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토지 적성평가 등에도 특례를 줬다. 또 실시 계획을 승인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손쉽게 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금은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유지 및 농어촌용수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만 쓰도록 제한을 뒤 막개발 여지를 차단했다.

김종철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복잡한 법률로 얽혀 있던 농업기반 시설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을 특별법을 통해서 쉽게 정리하고, 동시에 저수지 주변 막개발 가능성도 줄었다"고 밝혔다.

그간 저수지 개발을 위해서는 35개 법률이 정하는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는 탓에, 지자체가 나서 개발사업을 펼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다.

김기태 기자

저수지 주변 관광단지개발 가능

내년 6월부터 ... 정부, 농외소득 증대 기대

내년 6월부터 전망 좋은 저수지 주변에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저수지 같은 농업 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 지역을 다양하게 활용해 농외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관광단지개발, 신·재생에너지발전, 주택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과정에서 거쳐야하는 토지 적성평가 등에 특례를 줬다. 또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사업 시행에 따른 이익금은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 및 농어촌용수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 써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개발해 농외소득을 늘리도록 하면서도 난개발을 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6월 10일 시행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또 각종 농어

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편란을 이양하는 내용으로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농어촌 정비사업은 △논·밭·저수지 등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농가 정비·전원마을 조성, 뉴타운 등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관광휴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괄한다.

개정법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 소유자 등으로 확대해 민간인도 전월마을 조성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정연근 기자 yjung@naeil.com

서울신문

2009년 06월 15일 (월)
11면 경제

저수지 주변 관광단지 개발 허용

내년 6월부터 저수지 주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농업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 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서 관광단지 개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주택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저수지 주변개발 쉬워진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그간 각종 규제로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가 어려웠던 저수지 주변 지역의 개발이 쉬워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저수지 인근 농업생산기반시설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 체육시설업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3만㎡ 이상으로 제한해 소규모 난개발이 어렵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특별법 시행으로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늘어나는 등 농어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독자마당 ·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가능하면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소 첨부)
·e메일: special@segye.com ·팩스: 02-2000-1289 ·전화: 080-023-3434

기고 농어촌의 뉴 트렌드 저수지 주변 개발



이재국
서울대 건축과 교수

지난 10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이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구와 같이 호수(湖·저수지)의 수면(水面·수변(水邊)·수중(水中)을 고부가가치로 활용해 농업적기능에서 다원적기능으로 재생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에서 편안한 휴

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의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획기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어촌 지역에 소득증대를 가져다 줄 훌륭한 경관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졌으나 주변개발과 관련한 많은 행위규제로 인해 이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 때문에 경관 좋은 농어촌 저수지 등이 단순 농업용수 공급기능과 낚시터, 물놀이 등 단편적 레포츠기능으로만 이용됐다.

해외에서는 호수를 이용한 레저·관광활동을 도시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 많다. 독일의 라체부르크 호수는 산간지역의 외딴 소도시이지만 레일바이크 등의 다양한 철도관광 체험과 호수의 수상체험을 연결시켜 지역경제를 이끄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또한, 미국 버지니아 스미스 마운틴 호수는 강변의 큰 주택과 기숙사들, 그리고 골프코스를 둘러싼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성장이 이뤄지면서 주변 통근자와 은퇴자들을 매료시키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그 이외에도 독일의 보덴제, 일본의 이사노무라 수변공원, 영국의 케치호수 등 호수와 수변을 이용한 경제자원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번 특별법의 시행으로 저수지 주변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호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에 3개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에 머물고 체험·휴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범사업 조성계획 시 무분별한 개발논리에서 벗어나 저수지 등 수변이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수문분석을 통해 '저수지 담게, 농어촌 담게' 지형, 지세, 경관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개발되면 도시민에게는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민에게는 소득과 일자리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물이 단순한 경관자원에서 자연환경과 더불어 농어촌의 소득을 올리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어울림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기고

저수지 주변개발, 농어촌의 녹색희망으로



이우만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개발처장

본격적인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움은 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헌신해 온 수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농어업과 농어촌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DDA, FTA 등 개방이 심화되고 농어촌의 고령화와 과소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몇몇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만에 기대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선진화를 희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농어촌과 농어업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제도적인 지원

이 절실하다. 아울러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도 농어촌이 가진 경관과 호수 등의 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한다면 농어촌이 겪고 있는 위기를 제도와의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 6월 10일 정부에서 공포·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한 법률의 제정에 그치지 않고 커다란 농성 방향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호수와 같은 농어촌의 경관 자원을 2·3차 공간으로 확보하여 휴양·관광·레저시설까지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좁은 국토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러움과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변에는 싱싱한 지역특산물을 생산·가공·체험하는 직거래 장터가 들어서고, 관찰 데크 및 자전거도로와 승마장, 캠핑장, 힐링과 재즈 등 젊은이들의 공영 공간 등이 마련된다면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위적 교류가 아닌 자연스럽게 동정합일(動靜合一)된 교류의 장(場)이 될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스위스의 루체른 호수는 경관이 아름다워 유럽선 크루즈를 즐길 수 있으며, 호수 주변의 유서 깊은 교회, 광장,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관광 상품화 되어 있어 많은 여행객이 찾고 있다.

세계최초 최대 규모의 건강 팜 시설인 일본 아소팜랜드는 자연과 환경을 바탕으로 휴식과 산책, 농장체험을 테마로 설계되었으며, 오이타현 농업문화공원은 하사시 팜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약 40ha의 부지에 식사와 소망을 할 수 있는 메인시설과 과수 전시원, 꽃의 교류관으로 개발하여 농업이 가지는 여유로움과 안락함을 살려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주민의 휴식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개발의 주요 주체 중 하나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호수(담·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에 3개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에 머물고 체험·휴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경기도 안성의 고삼저수지 일대를 지역특산물인 포도를 테마로 한 바인 빌리지를 조성하여 복합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며, 충남 예산의

예당 저수지는 사과와 생태환경을 특화하고 워터-프린트에 레이크빌리지를 조성하여 푸드타운, 사과농장,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는 등 농어촌에 새로운 일 자리를 창출하는 롤(Role)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제·문화 교류 공간으로

교통의 발달에서 오는 문명의 편리함은 호수, 섬 등의 자연자원에서 머물고·체류할 수 있는 상대적 기회를 빼앗아 가면서 농어촌관광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으며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도 다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한 호수, 수변 등의 공간이 농촌형 뉴-트렌드인 관광산업으로 개발되고 호수간 녹색네트워크가 연결되면 농어촌이 가지는 지리적 낙후여건을 극복하고 경제·문화가 교류하는 休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특별법에 따른 저수지 주변개발이 농어촌에 일자리와 소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개발 쉬워진다

기사입력 2010-06-09 11:45

[서울=뉴스시스] 천금주 기자 = 저수지 주변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 제한이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해 6월9일 제정·공포됐다. 이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위법령으로 정해 시행한다.

주요내용은 저수지 인근 농업생산기반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 완화다. 이를 통해 관광단지개발사업, 체육시설업 등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총 저수용량 10만㎡ 이상의 저수지로 동력규모 746kW이상인 양·배수장 또는 방조제로부터 0.5km~2km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또 사업계획 수립 면적 기준은 3만㎡ 이상으로 규제해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개발부담금이나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감면되고 도로나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보조 또는 용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 및 농어촌용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만 활용할 방침이다.

저수지 주변지역 친환경 개발 길 열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 시행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0일 시행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개별법의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저수지 등의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양한 지역특화사업과 소득원 창출로 이어져 지역주민 고용 및 소득 증대는 물론,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재투자함으로써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9일 제정, 공포됐으며,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해 시행하게 된 것이다.

■ 특별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① 개발 관련 법률의 인, 허가 의제 처리 및 ‘국토계획법’에 관한 특례 규정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개별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하도록 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사업구역 내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발에 따른 행위 제한을 완화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② 관광단지개발사업, 체육시설업 등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해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활용한 농어촌주택의 분양, 임대사업,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체육시설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 이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주변지역은 총저수용량 10만 m³상의 저수지, 동력규모 746kW 이상인 양, 배수장 및 방조제로부터 0.5km~2km 범위 내로 제한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유지, 관리에 제약을 주지 않는 지역,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지역, 농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정했다.

사업계획 수립 면적 기준은 3만m² 이상으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③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농어촌 용수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등으로만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최대화 했다.



기획 주제

저수지 수변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

김 종 철*

1. 머리말

흔히들 우리의 농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살터로서의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분명히 매력적이지 못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대적인 격차는 계속하여 벌어지고 있다(표 1).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 계속 감소하고 노령화되고 있다. 총 인구 중 농어촌 인구비율은 1990년 25.6%에서 2000년 20.0%, 2005년 18.5%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또한, 농업소득의 한계는 한계농지의 방치를 초래하고 있다.

농촌의 공동화는 지역사회로서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도시의 과밀화를 촉진시켜 좁은 한반도를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몇몇 대도시로 더욱 좁히고 있다. 그래서 농촌을 사람들이 '마음 붙이고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일은 좁아진 한반도를 다시 넓히

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농촌문제는 농업인들만의 또는 농촌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던져진 시대적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월 1일 대통령 농촌여행계획(President's National Rural Tour)을 발표하였다. "건강한 미국경제의 원천은 잘사는 농촌에서 시작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다. 7월부터 9월까지 석달간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오키오 등 9곳을 농무장관, 교통장관, 보건장관 등 모든 관료들이 2~3명씩 조를 이뤄 번갈아 농촌을 찾고,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農心'을 전해 듣고 이를 정책입안의 자료로 삼을 계획이라고 한다.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장(jckim@mifaff.go.kr)



기획 주제

저수지 수변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표 1. 도시 근로자와 농가의 가구당 실질소득 비교¹⁾

(단위 : 천원)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7,427 (1,00)	9,997 (1,00)	12,278 (1,00)	19,519 (1,00)	26,853 (1,00)	28,643 (1,00)	39,012 (1,00)	44,100 (1,00)
농가소득	8,243 (1,11)	9,584 (0,96)	13,849 (1,13)	19,013 (0,97)	25,530 (0,95)	23,072 (0,81)	30,503 (0,78)	31,967 (0,73)

OECD 주요 국가들도 농촌정책의 패러다임을 분야별·방어적인 정책에서 통합적·농동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농촌정책의 목표를 농가수입에서 농촌지역의 경쟁력 확보, 지역자원의 가치 부여에 두고, 핵심 분야를 농업에서 벗어나 농촌관광·제조업 등 다양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두며, 중앙정부, 지자체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통합적·지역단위별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의 농촌 정책도 새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농촌은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적인 공간이 아닌 국토의 환경보전, 자원이용, 지역사회 유지 등 다원적 공간이다. 농업은 성장하는 식품산업, 1·2·3차 산업이 어우러진 복합 산업,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환경산업, 생명산업, 고도의 정보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산업, 기술과 자본, 경영을 필요로 하는 장

치산업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새로운 농촌정책은 농촌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기초로 농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농촌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이 제정('09. 6. 9 공포)되어 농어촌의 중요한 자원인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휴양·관광·주거공간 등이 어우러진 복합 단지로 개발하여 도·농간의 문화적·경제적 교류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별법의 제정 배경, 주요 내용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사업을 집중 검토하고,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분석”, 2004.12 자료에 통계청 최근자료를 추가하고,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05년 및 '0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환산



표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30년 미만		30-50년 미만		50년 이상		수해면적 (ha)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70,055	100	32,684	46.7	19,697	28.1	17,674	25.2	832,044.0
저수지	17,679	100	1,203	6.8	5,495	31.1	10,981	62.1	482,009.0
양수장	6,314	100	4,620	73.2	1,462	23.2	232	3.6	161,877.2
양배수장	120	100	83	69.2	22	18.3	15	12.5	30,045.7
배수장	744	100	696	93.5	40	5.4	8	1.1	3,014.8
취입보	18,115	100	4,953	27.3	7,832	43.2	5,330	29.5	90,285.8
집수암거	2,828	100	881	31.2	1,830	64.7	117	4.1	14,152.9
관정	22,661	100	20,163	89.0	2,461	10.9	37	0.1	50,658.6
방조제	1,594	100	85	5.3	555	34.8	954	59.9	

2. 특별법 제정 배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방조제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설인 저수지는 총 17,679개소 중 설치된 지 50년이 넘는 시설이 10,981개소로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70,055개소에 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53.3%가 설치된 이후 30년이 경과되는 등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안전사고와 막

대한 손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표 2).

이처럼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연적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국고지원은 50% 수준에 불과하여 부족한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표 3, 표 4).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은 수려한 경관 등으로 토지이용 수요는 높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에서 농림지역(농업



기획 주제

저수지 수변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표 3. 주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현황

구 분	수리시설 수(개소)			수해면적(ha)		
	계	공사관리	시군관리	계	공사관리	시군관리
계	70,114	13,293 (19.0%)	56,821 (81.0%)	821,699	530,160 (64.5%)	291,539 (35.5%)
저수지	17,649	3,326 (18.8%)	14,323 (81.2%)	469,621	348,047 (74.1%)	121,573 (25.9%)
양배수장	7,267	4,018 (55.3%)	3,249 (44.7%)	201,345	168,264 (83.6%)	33,081 (16.4%)
취입보	18,088	4,132 (22.8%)	13,956 (77.2%)	86,719	12,630 (14.6%)	74,088 (85.4%)
집수압거	2,801	331 (11.8%)	2,470 (88.2%)	13,946	1,067 (7.7%)	12,879 (92.3%)
관정	22,718	1,338 (5.9%)	21,380 (94.1%)	50,069	152 (0.3%)	49,617 (99.7%)
방조제	1,591	148 (9.3%)	1,443 (91.7%)			

표 4. 한국농어촌공사의 유지관리비 현황

(금액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소요액	2,743	2,666	2,732	3,109	2,937	3,121
국고보조	1,319	1,413	1,483	1,528	1,482	1,503
자체충당	1,424	1,253	1,249	1,581	1,455	1,618
(자산매각)	(621)	(710)	(654)	(922)	(717)	(980)

진흥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활동 이외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에 계획

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 음성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 소득증대는 물론,



표 5. 특별법의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 사업 등을 정의
제2장 농업기반시설등활용사업 계획의 수립 등(제4조~제6조)	- 농업기반시설관리자중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관광진흥법」 등 각 개별법의 사업주체로 지정 의제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 활용구역의 지정 등(제7조~제9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등활용구역을 지정·고시 및 주민 열람토록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제4장 농업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 등(제10조~제22조)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의 반영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 부담금 감면,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을 규정 -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안의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 제한 및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제23조~제24조)	-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 -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 비용으로 사용
제6장 보칙(제25조~제29조)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등을 규정 - 사업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국가·지자체가 보조·용자 가능토록 조치
제7장 벌칙(제30조~제33조)	- 사업추진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과 대리인·종업원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법인 및 개인의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재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특별법은 제18대 국회에서 한나라



기획 주제

저수지 수변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당 이계진 의원 외 34인이 발의하였고, 2009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2인 중 201인의 찬성으로 제정되었다. 특별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특별법의 주요 내용

특별법은 7장의 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2)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농어촌 주택의 분양·임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농수산물 공판장·집하장, 신재생에너지,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관광지 및 관광단지, 체육시설업 등을 시행할 수 있음(제2조 제5호).
- (3)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중 국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친환경개발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서 및 수질보전·개선계획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을 수립, 농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제4조).

(4)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사업종류에 따른 개별법상의 사업주체 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동활용구역 지정·변경·고시·지정해제 등의 절차를 규정(제5조~제8조).

(5) 농업생산기반시설동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9조).

(6)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및 고시, 지형도면 승인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제10조~제11조).

(7)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소유하지



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재료 적치장, 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손실을 보상(제13조~제14조).

(8)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 국토계획법에 관한 특례, 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지 처분제한 사항 등을 규정(제15조~제17조, 제22조).

(9)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제18조).

(10)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20조~제21조).

(1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 관리토록 규정(제23조~제24조).

(12) 사업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 등의 설치는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제26조).

(13)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승인 취소 시 청문, 권한 위임,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제25조, 제27조~제33조).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가. 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자

특별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범위를, 1)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3)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4)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11호에 따



기획 주제

저수지 수변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7)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특별법 제5조 제3항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자는,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였다.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나. 사업대상 지역의 범위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제4조 제2항에서는 ‘주변지역’ 및 ‘사업대상지역,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

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관계서류사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정할 계획이다. 저수지는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방조제는 관리수위 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사업추진에 효율적인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사업대상지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으로 하고, ‘면적기준’은 농어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기준인 3만² 이상으로 정할 계획이다.

다. 사업추진 절차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추진절차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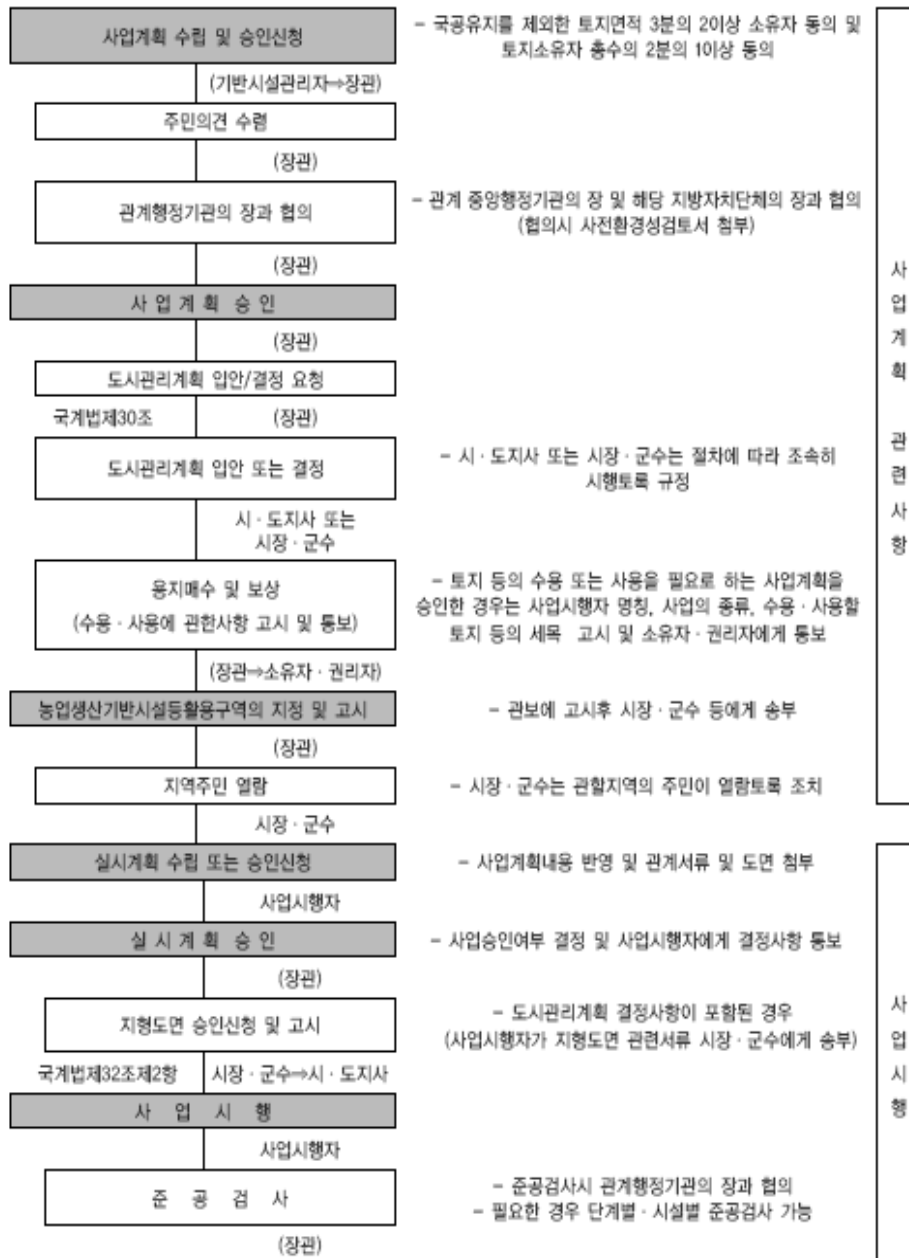


그림 1. 사업추진 절차도



기획 주제

저수지 수변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5. 맺는말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그간 농업용수 공급 등 주로 농업 목적에만 국한하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을 친수환경, 휴양생태공간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의 시행으로 농어촌 지역발전에 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전액 유지관리재원으로 확보하여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수질개선 등에 활용하여 대국민에 대한 다원적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주체적인 지위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 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고 예산의 지원을 수반하지 않고 자체자금 등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

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에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정한 역할의 범위에서 벗어나 제한적으로나마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주택사업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개발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중요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가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사업시행 초기에는 성공 사례의 조기 창출에 집중하고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발굴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것이다. 사업시행자도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적극적 이어야 할 것이다.



해외의 수변 개발 및 보전 사례

정 경 아*

1. 머리말

풍부한 물이 있는 풍경을 접하거나 흐르는 물을 관망하는 것으로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존재를 맡기듯,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정취를 느낀다. 그것은 과거 인류의 역사가 물을 통해 시작되고, 문화가 형성된 근원으로써 유기체적 관계를 갖는 생존의 기반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우리에게 많은 가치를 내포했던 존재인 하천과 호수 등을 비롯한 물은 농경이 기반이 되는 사회 속에서 단순히 수자원을 제공해 주는 자원공급처인 농업용수의 기능 이외에 치수, 저수, 수자원함양, 친수, 환경보전 및 다양한 생물종의 확보 등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그 의미와 기능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넘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물, 수공간에 대한 갈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이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으로서 안전성을 잃지 않는 가운데 쾌적성이라는 가치를 부가한 공간으로 관광적(여가공간) 기능에 대한 새로운 역할이다.

최근 수변공간은 친수욕구의 증대로 그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매력적인 수변공간의 창출이 곧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와 다르게 다양한 이용을 위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장기적인 안목의 바람직한 수변공간의 개발을 위해 수변공간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단편적이거나 해외사례를 통해 그들의 수변이용의 접근방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주. 동호 이사(kajung@dongho.co.kr)



2. 수변공간의 이용 및 관리의 필요성

수변공간(waterfront)이란 수제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 일정범위의 수역과 육역이 합쳐진 대상(帶狀)공간을 의미한다. 이 수역과 육역 두 가지 환경영역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공간으로 수변 공간은 이 두 영역의 합집합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수변은 자연을 풍부하게 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해 내는 동시에 사람들의 생활 장소로서 때로는 문화와 놀이의 장소이며, 자연 생태계를 풍부하고 건강하게 지탱시켜 주는 귀중한 생물 서식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변의 가치 재인식을 통한 수변공간의 이용 및 관리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첫째, 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 근무의 정착은 레저수요의 증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여가의 패턴 또한 다양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여가 욕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생태, 문화, 레저,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써 수변공간의 활용은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최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지역의 우수한 자연자원인 산, 구름지 등과 같이 어메니티 요소로써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친수성 수변개

발이 지역의 어메니티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변으로 탁 트인 수변공간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수변의 넓은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수변공간은 단위 면적당 서식하는 종의 밀도가 높으며 다양한 종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곳으로 수생 및 습지식물의 도입은 식물종의 수가 증가되며, 다양한 식물종의 출현은 다양한 동물의 유입으로 이어져 주변 생태계와 연계됨으로써 생태적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의 생태기능을 증진하는 역할 뿐만아니라 생태교육의 장소로써 여러 사람들의 교육과 체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3. 해외 수변개발 및 보전 사례

일찍부터 수변공간의 가치를 깨닫고 산업사회부터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오던 해외 여러나라들은 수변의 산업시설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버려진 수변공간을 회복하기 위해 보전 및 재생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고, 새로운 문화공간이자 휴식처로서 수변공간을 탈바꿈시킨 다양한 사례들이 부각되고 있다.



기획 주제

저수지 주변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표 1. 라체부르크 호수 주변 주요 프로그램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 시설	휴양 및 지원시설	• 나비정원, 해수욕장, 시골장터, 영화관, 도자기 전시장, 뷔페레스토랑 등	
	숙박시설	• 열차간 콘도, 나무위 호텔 등	• 개별 관광객과 타겟 그룹에 따라 숙박시설 다양화
	오락시설	• 소형궤도차, 레일바이크, 6인승 자전거, 수상자전거, 카누, 카약 등	• 시간단위로 대여, 무동력의 워락시 설로 다양한 체험이 가능
기타 프로그램		• 해변스모체험, 인라인스케이트 투어, 사진사와 함께하는 투어 등과 철도역을 놀이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23년에 한 번씩 새로운 역을 개장	

가. 독일 라체부르크 호수

라체부르크는 독일의 가장 북부지역인 슐레츠비히-홀스타인 주에 속해 있는 곳으로 라우엔부르크 호수 자연공원과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 호수를 이용한 레저·관광활동을 도시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함부르크나 뉘른베르크 같은 대도시에서 열차를 타고 오거나 혹은 자동차를 이용해야 하는 산간지역의 외딴 소도시인 이 곳은 레일바이크 등의

다양한 철도관광 체험과 호수의 수상체험을 연결 시킨 것을 킬러 콘텐츠(주요영커시설)로 내세우고 있다.

호수지구에 형성된 각종 체험시설 이외에는 라체부르크의 다른 관광매력물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워낙 다양한 체험시설과 과거 열차 모습이나 역사적 사건을 재현한 숙박시설, 이벤트 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최종 관광 목적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그림 1. 라체부르크 주요시설



표 2. 케직 호수마을 주요 프로그램

구 분	주 요 내 용
광산체험	슬레이트 광산으로 안내원과 함께 깊숙이 들어가는 체험
광물역사박물관	광물과 수정들에 대한 투어
연필박물관체험	미술대회, 부활절 어린이행사, 연필예술 기법 강습 등 체험학습장
영화관람체험	전통적인 분위기의 퍼스트 시네마 시스템 체험
호수극장체험	각종 영화제 참관
피즐체험	3D 홀로그램 등 착시효과 체험
호수유람선체험	다양한 보트로 50분간 호수 크루즈 체험
호수변 생태투어	아름다운 호수 전경 관람
호수지역버스타어	지역 운전사가 가이드를 하는 최대 11명 승차식 버스 투어

나. 영국 케직(Keswick) 호수마을

케직(Keswick)은 영국 컴브리아 아레데일(Allerdale)의 상업지역으로 바센스웨이트(Bassenthwaite) 호수 지역과 가까이 있으며, 이 두 곳은 국립호수지역으로 지정되어 1994년 지역내 상인들이 도심 중심

거리의 상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관광산업 계획을 프로젝트화하고 관광목적지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는 곳이다.



그림 2. 케직 위치도



그림 3. 케직 전경



기획 주제

저수지 수변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케직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체험활동의 극대화로 다양한 관광사업체를 집약화시켜, 연 평균 150만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으며, 성수기에는 지역주민보다 관광객이 많아 방문객을 이끄는 매력요소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쇼핑가 구성을 통한 쇼핑관광, 각종 예술, 문화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다.

케직 상업활동촉진지구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가 체험활동 극대화를 위한 마케팅과 프로모션 툴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지역상업인과 공공부문이 서비스하고 있는 생태 투어를 비롯한 20여종의 다양한 관광체험 활동은 이와 같은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다. 미국 버지니아 스미스 마운틴 호수 지구

스미스 마운틴 호수(Smith Mountain Lake)는 버지니아와 리첸버그의 남서쪽, 로아노케의 동남쪽에 위치한 큰 인공호수로 로아노케 강과 블랙워터 강에 댐을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자는 제안이 1920년대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해 댐건설이 1960년에 시작되어 1963년에 완공되었다.

완공 초기인 1960년대와 1970년대 스미스 마운틴 호수지구는 담배농장과 갖가지 농업을 하는 벽촌에 가까웠던 곳으로, 초기에는 트레일러 공원과 몇몇 소규모 주택들로 개발이 제한되었으나, 1980년



그림 4. 케직 호수마을의 다양한 관광활동



표 3. 스미스마운틴 호수지구 주요 프로그램

구 분	주 요 내 용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d & Breakfast : 침실, 자쿠지시설, 벽난로, 야외 바비큐, 개인 보트시설 등 제공 • Condos : 수영장, 테니스코트, 백사장, 쓰레기수거처리 서비스 등 제공 • Hotels, Motels : 기본적인 호텔 룸서비스 제공 • Vacation Rentals : 침실, 욕실, 테크시설, 개인 보트시설 등 제공 	
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종류의 복합쇼핑센터 	
휴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dford 기념병원, Carilion Franklin 기념병원 등 • 위급시에는 Carilion Emergency Care Center도 이용 가능 	
위락· 체험	승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 소유 및 경영하고 있으며, 안내원을 동반하는 체험 승마와 승마 캠프를 제공, 완전 예약제로 운영
	보우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터보트, 낚시보트, 하우스보트, 세일링보트, 카누, 카약등을 제공, 빌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보트도 탈 수 있음
	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가능한 다양한 숙박시설에서 제공하는 호수변 수영장과 개인 소유의 수영장 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음
	수상 스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트스키, 패들보트, 웨이크보딩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가 가능하며 약 16곳의 랜탈샵이 있음
	낚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가지가 넘는 어종의 낚시가 유명, 낚시 전문가에게 강습을 받을 수 있고, 낚시 대회에도 참여할 수 있음
	골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곳의 골프 클럽과 가족들끼리 즐길 수 있는 소형 골프 라운드도 준비
	하이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미스 마운틴 호수 주립공원에 다양한 실외활동 대여시설 마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인양조장 : 버지니아 와인을 맛보고 근사한 저녁 식사를 제공 • 댐 전기발전소 : 전기의 생산과정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제공



그림 5. 스미스마운틴 호수지구 전경



기획 주제

저수지 수변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대에 들어서면서 강변의 큰 주택들과 기숙사들, 그리고 골프코스를 둘러싼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성장이 이뤄지면서 주변 통근자들과 은퇴자들을 매료시키는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거주자들에게 의하여 이 지역 건설경기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1998년 정부의 수변개발 관련 법안은 수변개발을 거주자들에게만 허용하였고, 그것이 곧 부동산 가치를 두 배 정도 뛰게 만들었다. 그러자 정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다른 외부인들도 수변을 개발할 수 있게 법안을 변경하였고, 그 후 스미스 마운틴 호수지구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발전하게 되었다.

스미스 마운틴 호수지구는 한적한 전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쇼핑센터가 들어서 있어 관광객들이 맘껏 쇼핑을 즐길 수 있고, 또한 수변 개발 트렌드에 의한 “세컨드 홈(Second Home)”의 다양한 종류와 형태 그리고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으로 선택의 폭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의 기호에 만족을 주고 있다.

라. 영국 WWT(Wildfowl & Wetlands Trust) 습지센터

WWT는 예술가이며 자연학자인 피터 스콧(Peter Scott: 1909~1989)에 의해 조직

되어 현재 영국 전역에 9개의 방문자 센터가 있으며, 이들 총면적은 약 2,000ha 정도이다. 그 중 런던습지센터는 런던에서 차로 약 25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전체 규모는 약 0.4km² 정도이며, 원래는 템즈강과 인접해 있으면서 런던시민들의 물공급을 위해 1985년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저수지였으나 1919년부터 수원지로 사용하지 않다가 1980년 말부터 템즈강 수도회사에서 저수지 주변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생긴 이익금으로 저수지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습지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습지조성은 199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현재 크고 작은 연못이 약 30여개가 조성되어 각 연못마다 다양한 습지식물들이 성장하고 있다.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연못이나 습지는 각각 제 기능을 담당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이들 기능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습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마. 독일 보덴제(Bodensee)

보덴제의 면적은 571.5km²에 달하는 독일에서 제일 큰 호수로서 그 주변국은 독일을 포함하여 스위스와 오스트리아가 접해있으며, 제일 긴 지역의 폭은 14km,



길이는 63km에 달한다. 보덴제 제방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에 걸쳐 축조되었으나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 1959년 수질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984년에는 단순 수질개선뿐 아니라 호소변 및 얇은 수면에 대한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보덴제 호소변 계획(Bodenseeuferplan, BUP)을 수립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보덴제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제방을 철거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작업이었는데 제방철거를 위해 물의 흐름, 수고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적합하게 조성, 생태적으로 자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곳은 갈대를 중심으로 수변식생을 조성한 반면, 인간의 접근이 양호한 곳은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보덴제에 있는 호소연구소에서는 보덴제 관리를 위해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호수에는 선착시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벤취와 아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도 곳곳에 갖추어져 있다.

보덴제는 엄청나게 큰 호수의 수질을 개선할 뿐만아니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보며 이수, 치수, 친수가 공존하는 미래지향적인 관리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관리는 금지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6. WWT 방문자센터



그림 7. WWT 습지센터의 조성 모습



기획 주제

저수지 수변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수변 이용 사례들은 수변의 버려진 땅이나 미개발지 지역성을 바탕으로 지역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하여, 관광적 기능을 갖는 복합공간으로 개발하거나 지역의 자연을 살리기 위해 자연성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시도한 사례들로 지역이 갖는 입지여건에 따라 보전적 가치와 이용적 가치를 파악, 보전과 이용의 강도를 조절할 뿐, 이용을 위한 환경적 보전이 공존해야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개발과 이용이 추가 되는 사례들은 복합용도의 계획을 통해 지역재생에 따른 경계 활성화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성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 상품화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동시에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더욱이 영국 케직의 경우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활성

화를 위한 운동을 벌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을 거듭나게 한 실천적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전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사례는 지역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WWT 습지센터와 보텐제의 경우로 호수의 보전적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친수공간을 개발, 다양한 문화 및 생태 체험 활동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모범적 사례들이다.

4. 맺는말

여러 사례를 통해 고찰해 본 결과,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수변이 입지한 지역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각시켜 상품화하고, 지역성을 보전하며 지속적인 이용을



그림 8. 보텐제 조성모습



위해 노력하고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제대로 된 수변가치의 인식을 통해 무리한 이용적 개발을 자제하고 환경보전의 개념을 상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수변공간은 그 자체만으로 지역의 가장 중요한 물리적 구성요소이자 관광객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을 가진 곳이다. 수변공간이 지역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수변공간의 적절한 활용에 대해 소홀히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수변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사가 점차 증대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용 저수지는 전국에 19,966개소가 존재하며, 여기에서 농업용수의 60%가 공급된다. 따라서 이들 유희 저수지 수변공간에의 제대로 된 이용

을 위해서는 수변공간이 입지한 지역의 물리적, 인문사회적 여건 등 제반사항의 고려를 기초로 지역 특수성 및 잠재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적정 활용방향의 설정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 지향적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개발과 보전 개념의 공존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관리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안목의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위한 조직적인 관리운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나친 상업적 개발을 통제하되 자율경쟁에 의해 개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림 9. 보덴제의 자연



기획 주제

저수지 수변개발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 참고문헌

- 김광두(역), 1998, 21세기 Waterfront, 도서출판누리예, pp.14~18.
- 김시운, 2007, 8, 농촌어메니티 향상을 위한 농업용저수지의 게임이론 적용 최적 정비모델 개발, 공주대학교 대학원, p.1.
- 문지영·오덕성, 2008, 4, 도시공간속 수변개발(Waterfront Development)을 통한 도시 활성화 연구 방안, 도시설계학회, pp.191~192.
- 박현찬·이 일, 2007, 9, 서울의 도시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한강변 수변개발 및 관리방안, 물과 미래, pp.28~30.
- 백기영, 2008, 7, 수변개발과 예술, 환경과 조경.
- 정삼철, 2009, 6, 충주호권역 활성화전략, 충북개발연구원, pp.21~37.
- 최영국·조금숙, 2002, 2, 외국의 자연환경 관리 정책 및 성공사례, 국토연구원, pp.44~6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0. 6.10] [법률 제9762호, 2009. 6. 9,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2-500-179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란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
-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이 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따른 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대상 지역·위치 및 그 면적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기본 방향 및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대체 또는 정비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7. 환경보전과 경관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9. 소요토지의 확보 및 조성토지의 처분계획
10.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1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예정 시기 및 기간
12.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추정수익 및 유지관리재원 조성계획
1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
15.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3.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등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고시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장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①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는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하여 작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정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실시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흙·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농업생산기반 시설등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3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토지·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 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취소 처분
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 해제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 전용신고
20.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2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6.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7.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31.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설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에
대한 것에 한한다)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
인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①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 수립된 경우는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 (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

하는 자와 땅 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 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유지관리재원 조성

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①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유지관리재원의 관리) ①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 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유지관리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3.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과 수질개선 비용

제6장 보 칙

제25조 (지도·감독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비용의 부담) ①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 (행정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3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제31조 (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2. 제13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9762호, 2009.6.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	-------------------------------------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 6.10] [대통령령 제22189호, 2010. 6. 8,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2-500-1791~2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 가.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나.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저수지의 총저수용량이 10만세제곱미터 이상 10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규모가 746킬로와트 이상인 양수장·배수장의 경계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제3조 (사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
3. 제2조 각 호의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가. 다른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지구 등에 포함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

등활용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이 어렵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을 심하게 훼손하고 주변경관을 보전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 라.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주변지역의 면적 중 농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지역
- 마.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 바.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용이 어렵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사업계획의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7. 지역주민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9.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제5조 (주민의견 수렴)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시작일 부터 열람기간 종료 후 5일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地質)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 지정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시행자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4조제5호의 도면

제8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지정 해제의 사유

제9조 (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입어(入漁)·유어(遊漁) 또는 양식
8. 식물재배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6.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 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
5.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6.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

제11조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 그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 사업시행 기간
6.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제12조 (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보전대책”이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시 수질보전 부문과 관련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③ 계획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 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 사실을 통지받은 해당 지역에 전기·통신·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통신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통신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최초 단자(端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에 정압(定壓) 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 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 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 수송관

제15조 (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 (공사완료의 공고) 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7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용의 보조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상수도, 하수도 또는 공원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2.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과 연결되는 간선도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3. 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제19조 (행정처분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를 말한다.

제20조 (행정처분 고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시행지의 위치
4. 위반행위의 내용
5. 행정처분 내용 및 처분기간 등

제21조 (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의 접수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4.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고시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7.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의 교부
8.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9.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 및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11.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고시
12. 법 제28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22189호, 2010.6.8>

이 영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0. 6.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8호, 2010. 6.10, 제정]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2-500-179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4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준공검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행정처분 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28호, 2010.6.10>

이 규칙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보고서

2009. 4.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12월 24일, 이계진의원 대표발의

나. 회부일자 : 2008년 12월 26일

다. 상정 및 심사경과

○ 제281회국회(임시회)

-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년 2월 24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회부
- 제3차,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 상정, 제안설명
-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9년 3월 24일)
 - 상정, 제안설명, 의결(수정)

○ 제282회국회(임시회)

-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09년 4월 16일)
 -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계진 의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저수지, 방조제,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이 있으며, 그 대표적 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현재 등록된 시설은 17,679개소이나 설치연도가 50년 이상 된 시설이 10,981개소로써 전체의 62%에 달해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임.

이처럼 노후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수질보전과 연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주변지역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하여 DDA·FTA 등 시장개방과 고유가 등에 대비한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나 개별법에 따른 각종 규제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함.

또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국고지원은 2007년 현재 50%인 1,482억원에 불과하여 부족한 유지관리 재원의 안정적, 항구적인 확보 방안 마련이 절실함.

이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계획 수립으로 소규모 음성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 소득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재원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농어촌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지 성 배)

□ 법 제정의 필요성

- 제정안은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고, 지역주민 고용 및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함과 더불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수익금을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대표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경우 현재 등록된 17,679개소 중 설치연도가 50년 이상인 시설이 10,981개소로 전체의 62%에 달하고 있고, 70,055개소에 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53.3%가 설치된 이후 30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자연재해 발생시 안전 사고와 막대한 손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30년미만		30-50년미만		50년이상		수혜면적 (ha)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시설수	%	
계	70,055	100	32,684	46.7	19,697	28.1	17,674	25.2	832,044.0
저 수 지	17,679	100	1,203	6.8	5,495	31.1	10,981	62.1	482,009.0
양 수 장	6,314	100	4,620	73.2	1,462	23.2	232	3.6	161,877.2
양배수장	120	100	83	69.2	22	18.3	15	12.5	30,045.7
배 수 장	744	100	696	93.5	40	5.4	8	1.1	3,014.8
취 입 보	18,115	100	4,953	27.3	7,832	43.2	5,330	29.5	90,285.8
집수암거	2,828	100	881	31.2	1,830	64.7	117	4.1	14,152.9
관 정	22,661	100	20,163	89.0	2,461	10.9	37	0.1	50,658.6
방 조 제	1,594	100	85	5.3	555	34.8	954	59.9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지출현황을 보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국고지원은 실제 유지관리지출 비용에 50% 정도에 불과하여 국고지원이 확대되지 않는 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유지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 지출현황〉

(금액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소요액	2,743	2,666	2,732	3,109	2,937	3,121
국고보조	1,319	1,413	1,483	1,528	1,482	1,503
자체충당	1,424	1,253	1,249	1,581	1,455	1,618
(자산매각)	(621)	(710)	(654)	(922)	(717)	(980)

※ 2008년 자료는 결산 미완료에 따라 예산상 수치임.

최근 DDA 협상, FTA 확대 등 농업시장개방과 고유가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과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생산 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을 통해 농촌을 농업생산의 터전 이외에도 휴양·관광·주거공간 등이 어우러진 복합 단지로 개발하고, 도농간의 문화적·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며, 궁극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제정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생각됨.

〈도시 근로자와 농가의 가구당 실질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7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7,427 (1.00)	9,997 (1.00)	12,278 (1.00)	19,519 (1.00)	26,853 (1.00)	28,643 (1.00)	39,012 (1.00)	44,100 (1.00)
농가소득	8,243 (1.11)	9,584 (0.96)	13,849 (1.13)	19,013 (0.97)	25,530 (0.95)	23,072 (0.81)	30,503 (0.78)	31,967 (0.73)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분석” 2004.12 자료에 통계청 최근자료를 추가하고,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05년 및 '07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환산

□ 법안의 주요내용

○ 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제처리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의 지정,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및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7장 33조로 구성되어 있음.

- 먼저 제1장(총칙)에서는 법 제정의 목적이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며,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사업시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주변지역활용 구역의 지정, 인·허가 의제처리,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5장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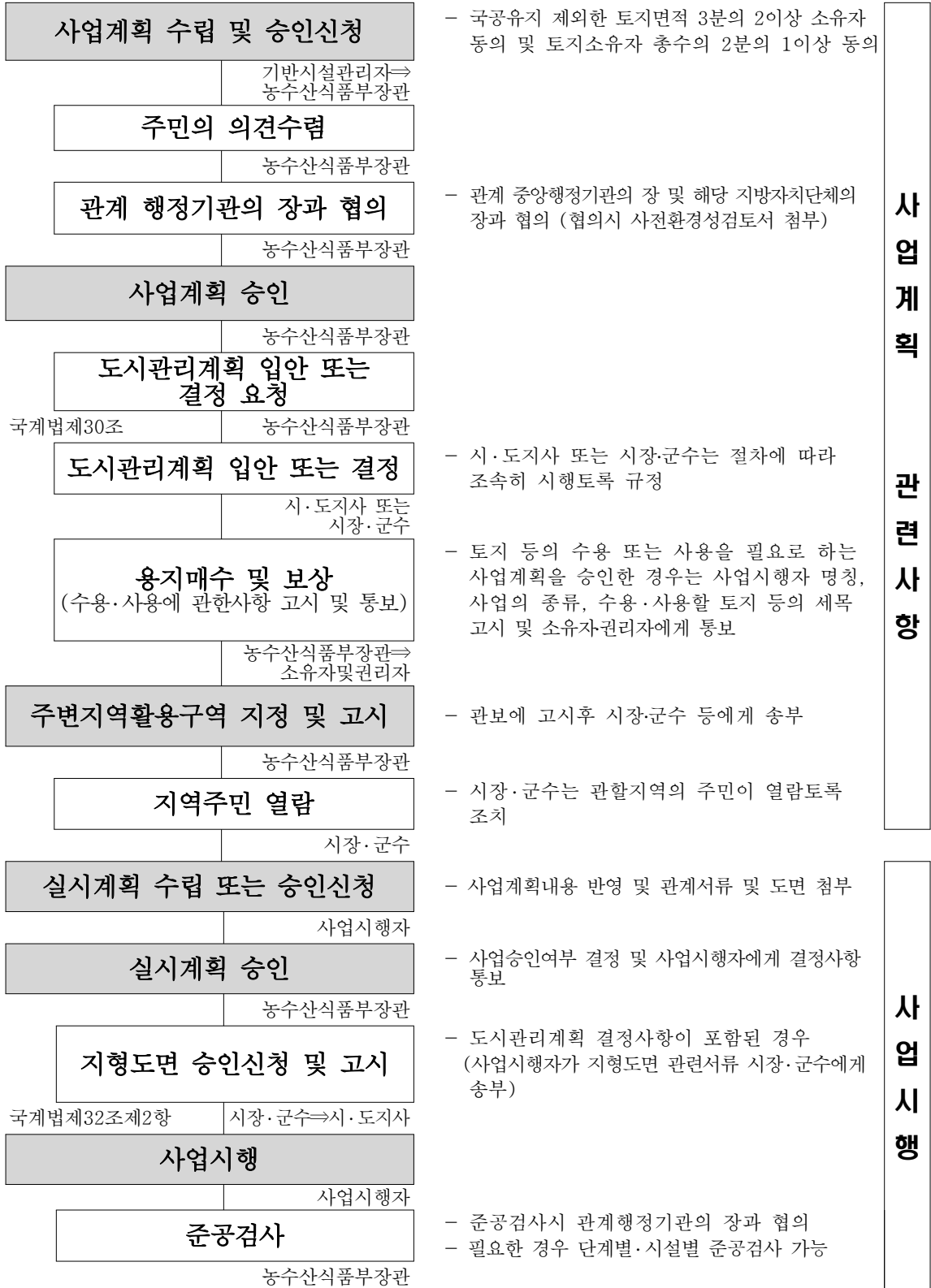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처분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이법의 목적과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 사업 등을 정의
제2장 농업기반시설활용 사업 계획 등(제4조~제6조)	○ 농업기반시설관리자중 국가, 지자체, 한국농촌공사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 「관광진흥법」 등 각 개별법의 사업추체로 지정의제

구 분	주 요 내 용
제3장 주변지역활용구역의 지정 등(제7조~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주변지역 활용구역을 지정·고시 및 주민 열람토록 규정 ○ 주변지역 활용구역 안에서의 건축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제4장 농업기반시설활용 사업의 시행 등(제10조~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의 반영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허가 의제사항, 부담금의 감면사항,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의 사항을 규정 ○ 주변지역활용구역안의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 제한 및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
제5장 유지관리재원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는 농업기반시설 활용사업으로 발생할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 ○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수질개선 비용으로 사용
제6장 보칙(제25조~제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등을 규정 ○ 사업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국가·지자체가 보조·용자 가능토록 조치
제7장 벌칙(제30조~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과 대리인·종업원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법인 및 개인의 양벌규정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참조 : 제정안에 따른 사업시행 절차도〉



**사업계획
관련사항**

사업시행

※ 농수산식품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 위임 가능
 - 시·도지사는 농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가능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의 범위 (안 제2조 제6호, 제5조 제3항)

- 안 제2조제6호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사업”이라 함)의 범위를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 각각의 해당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주변지역 활용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관광진흥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각 개별법의 사업시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제정안에 대하여는 주변지역 활용사업의 범위를 관광지·관광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 다른 공공기관의 사업범위로 확대하고, 각 개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요건에 맞춰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를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일괄하여 지정할 경우,

한국관광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의 핵심사업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고, 공공기관간의 역할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등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 그러나, 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를 다른 공공기관 해당사업의 시행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와 다른 공공기관간의 역할이 중복될 소지가 적고,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농어업 시장 개방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된 농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지역활용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수질 개선 등에 한정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변지역개발사업의 범위 확대와 사업시행자 지정의제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FTA 협상확대 등으로 농수산물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 소득증대의 한 방편과 농어업·농어촌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대안으로 도농교류의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고,

이 법의 제정취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 마련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변지역 활용사업의 범위에 주말농장, 농어촌 체험시설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사업의 범위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사업계획 승인시 한국농어촌공사를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의제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제정안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택지개발사업과 사업자 지정의제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의 견
6.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6. ----- ----- ----- -----

원 안	수 정 의 견
<p>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농어촌정비법」 제3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p> <p>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사업</p>	<p>----- -----.</p> <p>가.·나. (원안과 같음)</p>
<p><u>〈신 설〉</u></p>	
<p><u>다.</u>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p>	<p><u>다.</u> 「<u>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관광농업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u></p>
<p><u>라.</u>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p>	<p><u>라.</u> ----- ----- ----- -----</p>
<p><u>마.</u>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p>	<p><u>마.</u> ----- ----- -----</p> <p><u>바.</u> ----- ----- -----</p>

원 안	수 정 의 견
<p>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및 대지조성사업</p> <p>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p> <p>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p> <p>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p> <p>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p> <p>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 시 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 주체 또는 시행자로 지정된 것 으로 본다.</p> <p>1.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p> <p>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p> <p>3.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p> <p>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p>	<p>사. ----- -----</p> <p>〈삭 제〉</p> <p>아. ~ 자. (원안과 같음)</p> <p>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p> <p>③ ----- ----- ----- -----</p> <p>1. ~ 3. (원안과 같음)</p> <p>〈삭 제〉</p>

□ 주변지역활용구역의 지정 (안 제7조)

○ 안 제7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한 경우 주변지역활용구역을 지정·고시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여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주변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역주민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더불어 제정안 제9조에 따라 고시된 주변지역 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제한함으로써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주변지역 활용사업에 장애가 되는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함)에서는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신설할 경우 다양한 지역·지구 등이 누진적으로 지정·운용됨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 지정이 남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일반 국민의 토지이용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수준에 맞추어 기본법 별표와 동법 시행령, 국토해양부 장관의 고시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칙에서 기본법 별표를 개정하여 법률 간의 충돌과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 해당법률에서 직접 지구를 지정할 경우 기본법 별표, 시행령에 위임하여 지정할 경우 기본법 시행령, 기타 하위규범에서 지정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지구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경우 기본법 별표를 개정해야 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관련조문 참조)

○ 한편, 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서 지역·지구의 열람 등 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원화된 운영절차를 통해 지역·지구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 등 토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주변지역 활용구역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8조에 따르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안 제13조)

○ 안 제13조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타인 소유 토지출입 및 일시사용에 관한 규정은 개발행위 등을 규정한 대부분의 법률에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지, 동의 절차, 출입의 시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사용 등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 제2조제3호와 제4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활용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허가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례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한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의 견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생 략)	① (원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② ----- ----- ----- ----- ----- ----- ----- ----- -----

원 안	수 정 의 견
<p>받을 수 없는 때에는 <u>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u></p> <p>③~⑤ (생 략)</p>	<p>-----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u>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u></p> <p>③~⑤ (원안과 같음)</p>

□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안 제15조)

- 안 제15조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 사항이 포함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일괄 의제처리하고 있음.
- 인·허가 등의 일괄의제처리는 사업추진 시 인·허가 등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각각 협의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사업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느 하나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전체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주변지역활용사업과 관련된 39개 법률의 의제사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의 경우 제정안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발시설 활용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에도 농업용저수지에서 수계 상 상류방향 5km 이내의 지역에 개별 공장 및 산업단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농림수산식품부도 해당 내용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상향정비

하기 위하여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업단지 개발과 공장설립 등에 관한 의제처리조항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제정안 제2조제6호의 사업범위, 제5조제3항의 사업자 지정의제, 제15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 처리가 병행 검토되어야 하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을 제정안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조항도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서 협의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면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있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법례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의제처리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안 제22조)

- 안 제22조는 국·공유지를 사업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의 관계규정(경쟁 입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있음.
 - 이는 행정재산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제공되고 있는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을 제한하되, 공공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생각됨.
- 다만, 안 제22조제3항에서는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협의 요청시 관계행정기관이 반드시 용도폐지 등을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다른 법률의 일반적인 입법례를 감안하여 법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국·공유지 처분제한 등에 대한 입법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7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7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대체토론의 요지

특이 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법률안심사소위원장 이 계 진)

농업생산기발시설 활용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범위에서 배제하는 한편, 주말농장, 농어촌체험시설 등 농어촌 소득증대와 농어업·농어촌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도농교류활성화 사업을 추가함.

6. 심사 결과

수정 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가 있었음.

8. 기타 사항

없 음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9. 4. .

제안자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사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는 한편, 주말농장, 농어촌체험시설 등 도농교류활성화 사업을 추가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설립 등에 대한 의제처리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음.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주변지역을”을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로 한다.

안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안 제2조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안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안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안 제7조제3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며,”로 한다.

안 제11조제3항의 전단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단서 중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를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법 제25조”를 “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제2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제23호 및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8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3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9호를 제35호로 한다.

안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 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안 제22조제3항 중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를 “협의에 관하여”로 한다.

안 제32조 본문 중 “국가를 제외한 법인의 대표자나”를 “법인의 대표자나”로 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236을 다음과 같이 한다.

236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 활용구역
-----	----------------------------------	--------------------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그 <u>주변지역을</u>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u>농업생산기반시설</u>”이란 <u>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농어촌정비법</u>」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저수지, 방조제, <u>둑(堤防)</u>, 그 밖에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u>농어촌정비법</u>」 제23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p> <p>3. “<u>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u>”란 「<u>농어촌정비법</u>」 제1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u>한국농촌공사</u>를 말한다.</p> <p>4. · 5. (생략)</p>	<p>제1조(목적) ----- ----- <u>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 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u> ----- ----- -----.</p> <p>제2조(정의) ----- -----.</p> <p>1. (원안과 같음)</p> <p>2. “<u>농업생산기반시설</u>”이란 「<u>농어촌정비법</u>」 제2조제6호에 따른 <u>시설을 말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삭 제></p> <p style="padding-left: 20px;"><삭 제></p> <p>3. ----- ----- ----- ----- <u>한국농어촌공사</u> -----.</p> <p>4. · 5. (원안과 같음)</p>

6.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 나. (생략)

〈신 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설치사업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사업과
도시계획사업

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아. · 자. (생략)

6. -----
----- 농업생산기반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

가. · 나. (원안과 같음)

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의 기반정비

라. -----

마. -----

바. -----

사. -----

〈삭 제〉

아. · 자. (원안과 같음)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생략)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60일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주체 또는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 3. (생략)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④ (생략)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

③ -----

-----.

1. ~ 3. (원안과 같음)
- <삭제>

④ (원안과 같음)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5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를 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

-----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③ ~ ⑤ (원안과 같음)

제15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① -----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 10. (생략)

1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7조 따른 노선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유료도로법」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협의 또는 허가

12. ~ 22. (생략)

2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 10. (원안과 같음)

11. -----

----- 법 제24조 -----

12. ~ 22. (원안과 같음)

<삭제>

23. -----

<p>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p>	<p>----- ----- ----- ----- ----- -----</p>
<p>2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p>	<p>24. ----- -----</p>
<p>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p>	<p>〈삭 제〉</p>
<p>2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p>	<p>〈삭 제〉</p>
<p>28.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p>	<p>25. ----- ----- -----</p>
<p>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p>	<p>26. ----- -----</p>
<p>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p>	<p>27. ----- -----</p>

<p>31.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p>	<p>28. ----- -----</p>
<p>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p>	<p>29. ----- ----- -----</p>
<p>33. 「측량법」 제25조에 따른 측량 성과사용의 심사</p>	<p>30. ----- -----</p>
<p>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p>	<p>31. ----- ----- -----</p>
<p>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 계획의 승인</p>	<p>32. ----- ----- ----- -----</p>
<p>36.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p>	<p>33. ----- -----</p>
<p>3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 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 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p>	<p>34. ----- ----- ----- ----- -----</p>
<p>38.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 협의</p>	<p><삭 제></p>
<p>39. 「광업법」 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 처분</p>	<p>35. ----- ----- -----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원안과 같음)</p>

제1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반시설활용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
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제2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① · ② (생략)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
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양벌규정) 국가를 제외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7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반시설활용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 ① · ② (원안과 같음)
- ③ -----

----- 협의에
관하여 -----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조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 결과

1.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바로잡음

(원안 규정)

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등을 인용하고 이에 대한 약칭을 각각 “농업기반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관리자”로 사용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구역”,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사업”을 각각 “농업생산기반시설활용사업”, “주변지역활용구역”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로, “수용 또는 사용”을 “수용등”으로 약칭하고 있음

용 어 (약 칭)	조 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제2조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기반시설)	제2조, 제4조,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농업기반시설관리자)	제2조, 제4조, 제16조, 제24조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구역(주변지역활용구역)	제2조, 제7조~제9조, 제18조, 제22조, 제30조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사업(농업기반시설활용사업)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23조, 제26조, 제27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9조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29조
수용 또는 사용(수용등)	제5조, 제18조

(문제점)

그런데, 안 제2조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제정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 굳이 정의할 필요성이 없으며, 안 제2조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를 안 제4조에서 “농업기반시설관리자”로 약칭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약칭으로 인해 오히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또한, 안 제2조의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구역”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사업”을 안 제3조 및 제7조에서 각각 “농업기반시설 활용사업” 및 “주변지역활용구역”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이는 “농업생산기반 시설과 그 주변지역을 활용”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약칭의 용어가 상이하여 별개의 구역 및 사업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음.

안 제5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로 약칭하고 있어 특별자치도 지사의 지위가 적절하지 못하며, “시장·군수”에 구청장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법률 집행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안 제18조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을 “수용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토지등”과 연결되어 법문이 어색하고 약칭의 활용도(2번 사용)가 낮아 굳이 약칭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됨.

(수정검토안)

따라서, 안 제2조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삭제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약칭하지 않으며, “농업생산기반 시설및주변지역활용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구역”을 각각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으로 약칭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의 “시·도지사”에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약칭하며, 안 제18조의 “수용 또는 사용”은 약칭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음

2. 사업범위에서 포괄위임 규정 삭제

(원안 규정)

제정안은 제2조제6호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및주변지역활용사업”을 각 목에서 「농어촌정비법」 제3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그런데, 안 제2조제6호자목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어,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법률의 적용 시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정의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사업의 범위는 이 법에 따라 특례의 적용을 받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보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수정검토안)

따라서, 안 제2조제6호자목을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음

3. 행정처분의 포괄위임 규정 수정

(원안 규정)

제정안은 제27조제1항에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1조에서는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그런데, 헌법은 죄형법정주의(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를 규정하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형벌의 종류, 최고형 등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고,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안 제31조중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는 이에 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정검토안)

따라서, 안 제31조 중 “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를 삭제하는 안을 마련하였음

원안	검토안
<p>제3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u>이전</u> <u>그 밖의 처분이나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제31조(벌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u>이전</u> <u>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국회 의안과 수정조문

의안과 조문수정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 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농어촌정비법」 제3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5.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란 농업생산기반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폐지된 시설 및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유지관리 재원 확보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p> <p>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분양·임대사업,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p>
<p>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p> <p>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3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p>	<p>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p> <p>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p>
<p>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p> <p>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p>	<p>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p> <p>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p>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

제15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 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협의 또는 허가

1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시행자 또는 사업주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

제15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13.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 따른 노선 인정의 공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접도 구역의 지정에 관한 것에 한한다) 및 「유료도로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

14.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제2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와 제3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2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②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와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